

2015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들어가며..

이 사례집은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발굴하여 다른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행동강령 이행역량을 강화·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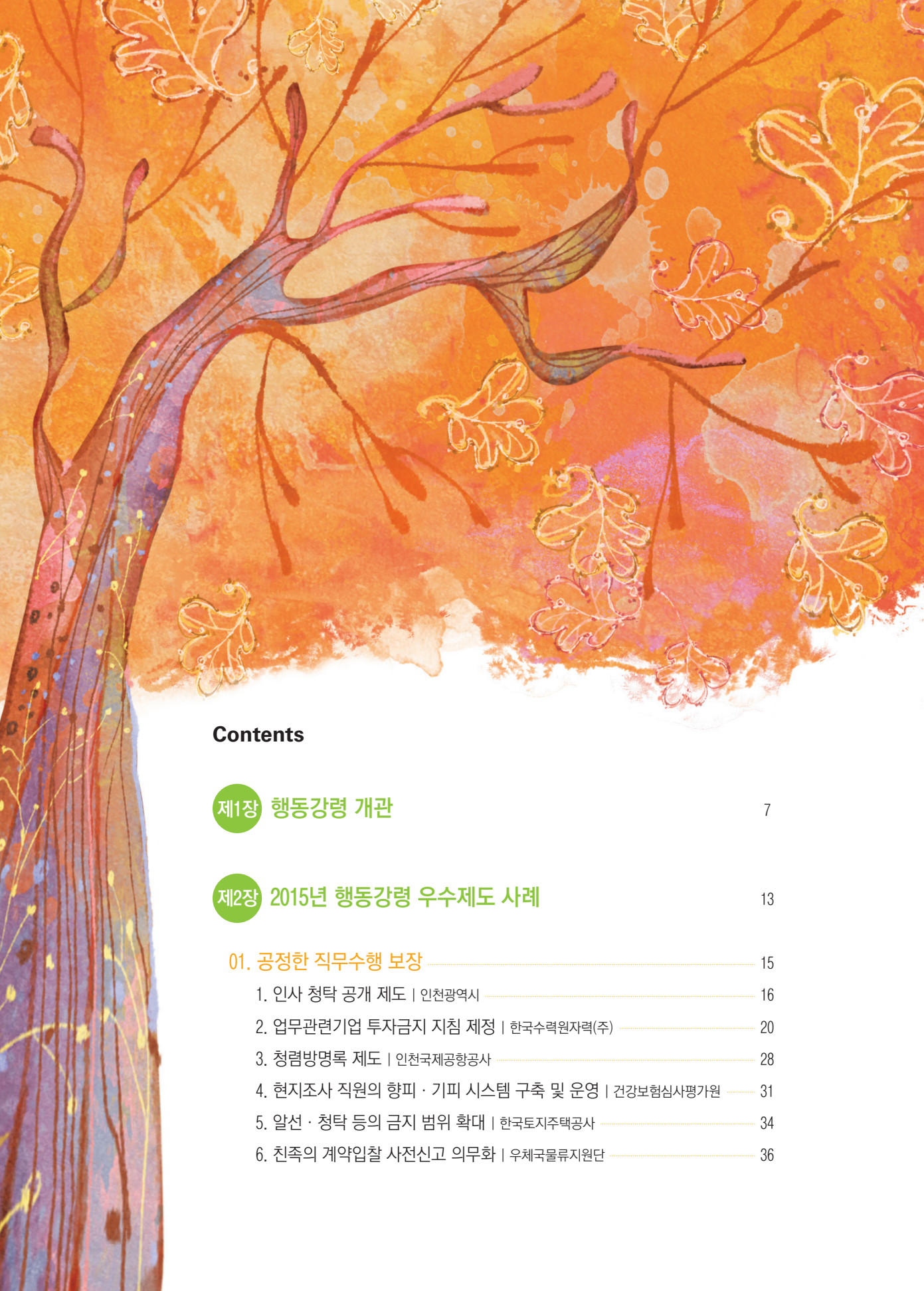
제1장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개념 및 연혁, 운영체계 등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장에는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수범사례 중 우수제도로 선정한 20개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는 2010~2012년에 선정한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의 요약본을 수록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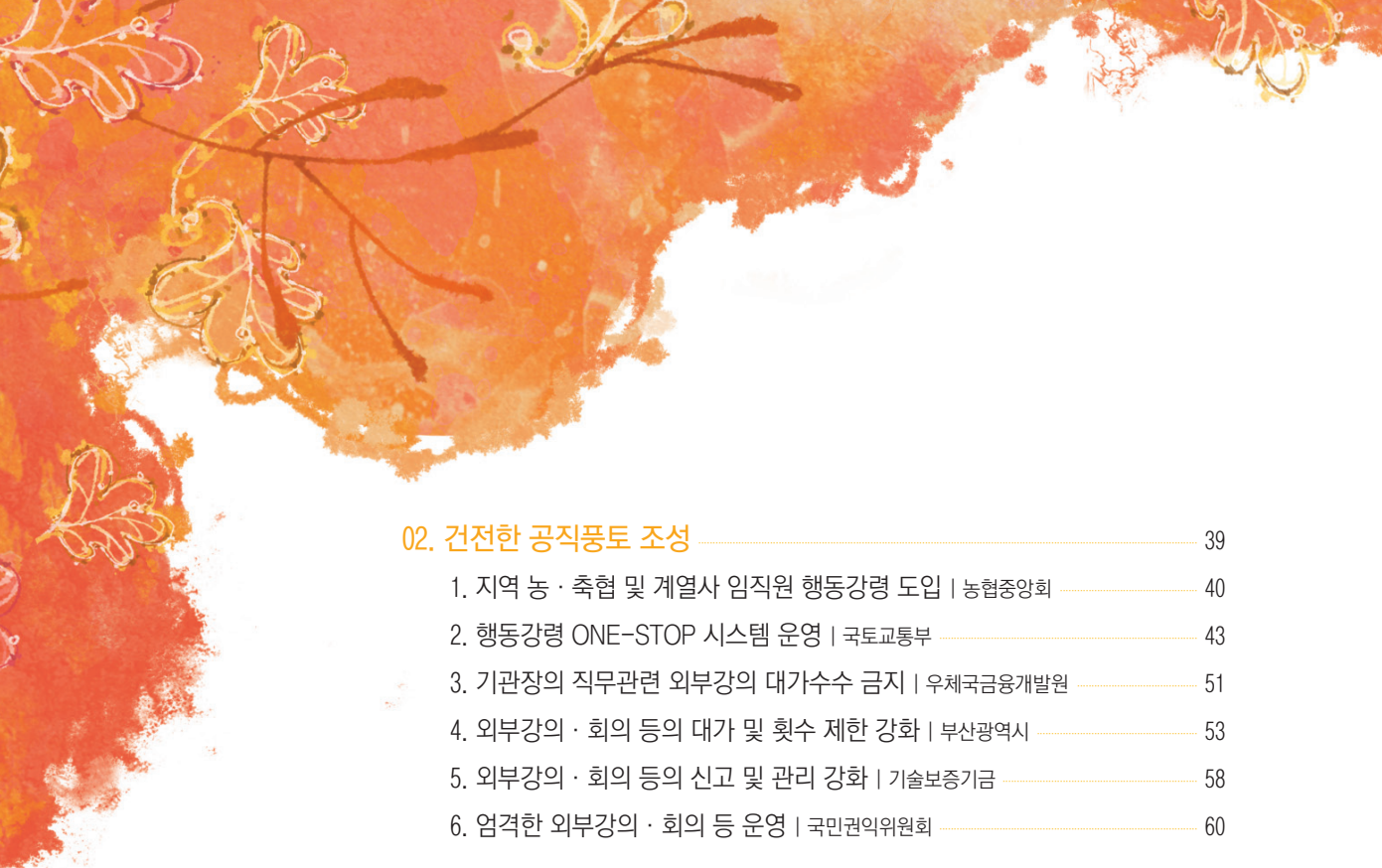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서 다수의 우수제도를 제출하였으나 전부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ontents

제1장 행동강령 개관	7
제2장 2015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13
01.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15
1. 인사 청탁 공개 제도 인천광역시	16
2. 업무관련기업 투자금지 지침 제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
3. 청렴방명록 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28
4. 현지조사 직원의 향피·기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
5. 알선·청탁 등의 금지 범위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34
6. 친족의 계약입찰 사전신고 의무화 우체국물류지원단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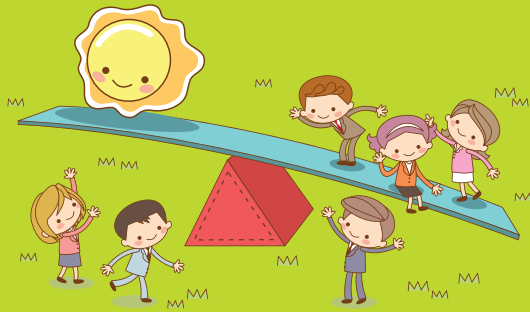


02.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39
1. 지역 농·축협 및 계열사 임직원 행동강령 도입 농협중앙회	40
2. 행동강령 ONE-STOP 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	43
3. 기관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수수 금지 우체국금융개발원	51
4.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및 횡수 제한 강화 부산광역시	53
5.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관리 강화 기술보증기금	58
6. 엄격한 외부강의·회의 등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60
03. 위반자 제재 강화 및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65
1. 반부패·청렴 유공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경상남도교육청	66
2. 승진심사 시 「청렴가점제」 운영 한국남부발전(주)	69
3.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공정거래위원회	71
4. 부패행위 제언·주선자 징계처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73
04. 교육·상담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75
1. 행동강령 사전·사후 컨설팅 「클린 서포터즈」 운영 교통안전공단	76
2. 알기 쉬운 「의원 행동강령 해설집」 발간 부산광역시의회	80
3. 맞춤형 In-Time 정보 서비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2
4. 행동강령 준수안내 e-mail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85

부록 2010년~2012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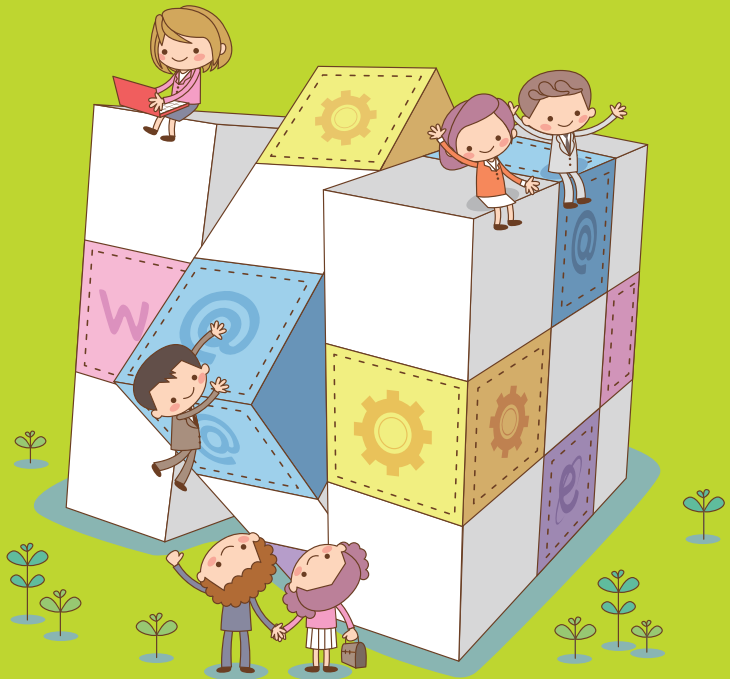
01. 2010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93
02. 2011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117
03. 2012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123

2015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제 1 장

행동강령 개관



행동강령 개관

행동강령 개념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행동강령 연혁

국가·지자체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03. 5. 19. 시행 이후 4차에 걸쳐 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선출직 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11. 2. 3. 시행
공직유관단체는 '05. 7. 21. 「부패방지법」에 시행근거 마련 이후 내부 규정(사규)으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공직자 행동강령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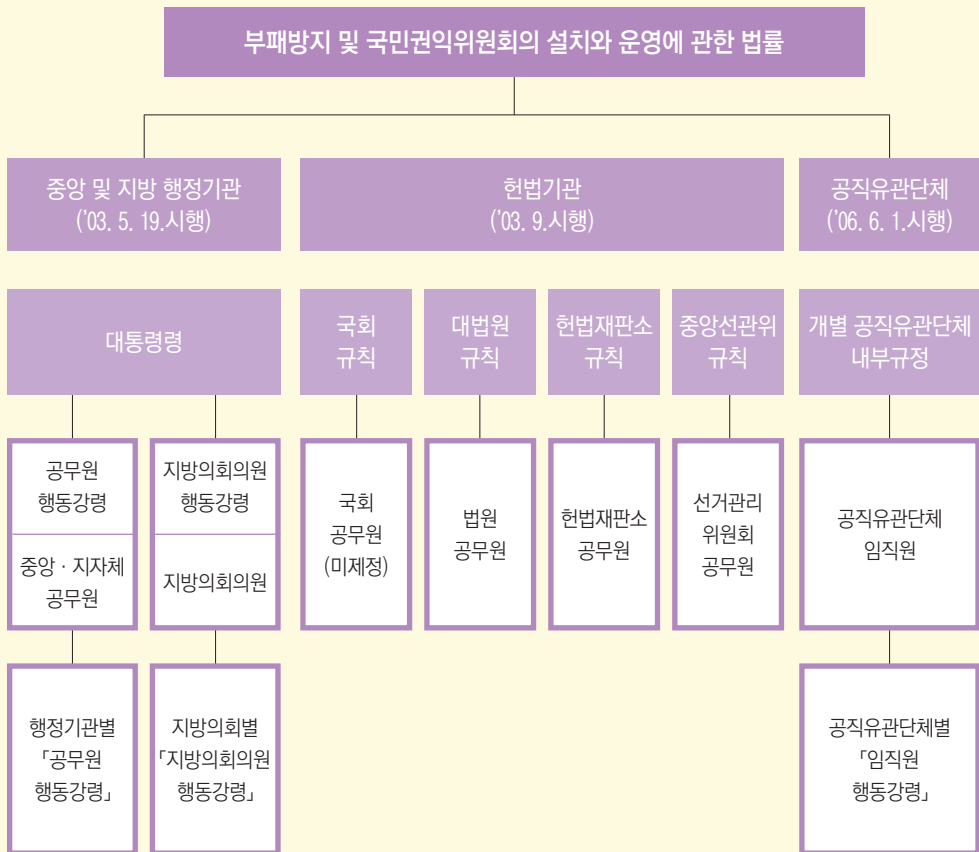
공무원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공포('03.2.18.)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행('03.5.19.) • 법원 등 헌법기관 각각의 규칙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03.9.)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05.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08.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08.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편향 금지 추가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0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자 및 이해관계 직무 범위 확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신설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10.11.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11.2.3.)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의해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자율적으로 제정·시행('04.9.14.) • 「부패방지법」에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법적 근거 마련('05.7.21.)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청렴위원회가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행동강령 제정·시행 권고('06.4.3.) •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사규)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06.6.1.)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 헌법기관은 자체규칙, 공직유관단체는 내부규정(사규)으로 행동강령 제정·운영

- 각급 기관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행동강령을 심사하여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관에 시정을 권고함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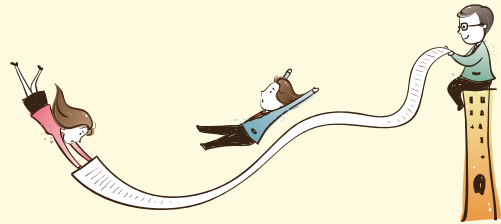
행동강령 행위기준

- 「공무원 행동강령」은 총 16개 행위기준으로 구성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총 15개 행위기준으로 구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4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5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인사 청탁의 금지 •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활동 제한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영리행위 신고 • 금전 거래 등 제한 •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 성희롱 금지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총 19개 행위기준으로 구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예규 제84호)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7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2015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2015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제2장 2015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01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 ① 인사 청탁 공개 제도 | 인천광역시
- ② 업무관련기업 투자금지 지침 제정 | 한국수력원자력(주)
- ③ 청렴방명록 제도 | 인천국제공항공사
- ④ 현지조사 직원의 향피·기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⑤ 알선·청탁 등의 금지 범위 확대 | 한국토지주택공사
- ⑥ 친족의 계약입찰 사전신고 의무화 | 우체국물류지원단

01 인사 청탁 공개 제도

“공정한 인사 분위기를 해치는 인사 청탁 및 알선 직원에 대한
공개 제도를 운영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

[인천광역시]

추진경과

-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계획 수립(14. 12.)
- 인사제도 개선계획을 반영한 '15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15. 1.)
- '15년 하반기 정기인사 예고 시 인사 청탁자 공개 계획 알림(15. 7.)
- 내부 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해 인사 청탁자 공개(15. 8.)

주요내용

-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대해 직위 또는 친분 등을 이용한 부당한 개입 행위 시 청탁 및 알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추진
- 정기인사 예고 시 인사 청탁자는 공개할 방침을 고지

|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예고(게시문) |

1. 인사방향
 - 인사청탁 배제 → 공정한 인사
 - 외부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는 공개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정기인사 발표 시 인사 청탁자 공개
 - 기 준 : 청탁 정도가 심한 대표적인 청탁자
 - 방 법 : 내부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공개
 - 내 용 : 개인 신상정보(실명)를 제외한 소속, 직급, 청탁내용

성 과(기대효과)

- 청탁자에 대한 공개 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인사 원칙 확립 및 조직 활성화
-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향후계획

- 향후 청탁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청탁자 전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청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및 징계 처분 등 문책 시행

| 붙임1 | 인사 청탁자 공개 게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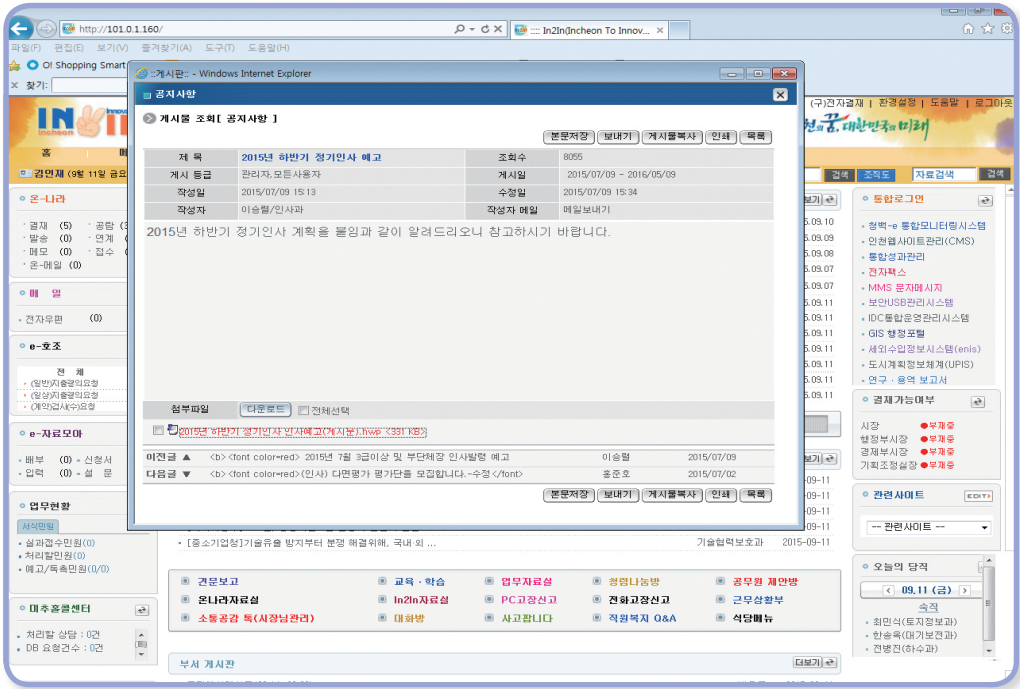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 외부인사 청탁자 공개

- **(총평)** 외부 인사를 통한 청탁은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했음.
‘외부 청탁 근절 및 공정한 인사’라는 민선 6기 인사 방침이 정착되고 있음.
 - **(청탁 공개 사항)** 청탁 정도가 심한 대표적인 청탁자 명단 : 붙임
 - **(그 외 청탁 사항)**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승진 또는 전보가 가능함에도 외부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음.
 - 본인의 능력,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승진 또는 전보가 결정되었음에도 마치 청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됨
 - 이는 공정한 인사 질서를 문란시킴
 - 향후 외부인사를 통한 청탁자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및 승진 제척 등 인사 불이익 조치
 - **(향후 계획)** 보다 엄격한 제재 계획(시장님 특별 지시사항)
 - 청탁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청탁자 전원 실명 공개
 - 청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및 징계 처분 등 문책
- ※ 본인의 인사 고충이나 희망 인사 사항은 ‘인사 고충(In2In)’, ‘희망 보직 신청’, ‘부서장 추천’, 기타 방문 상담해 주시면 충실히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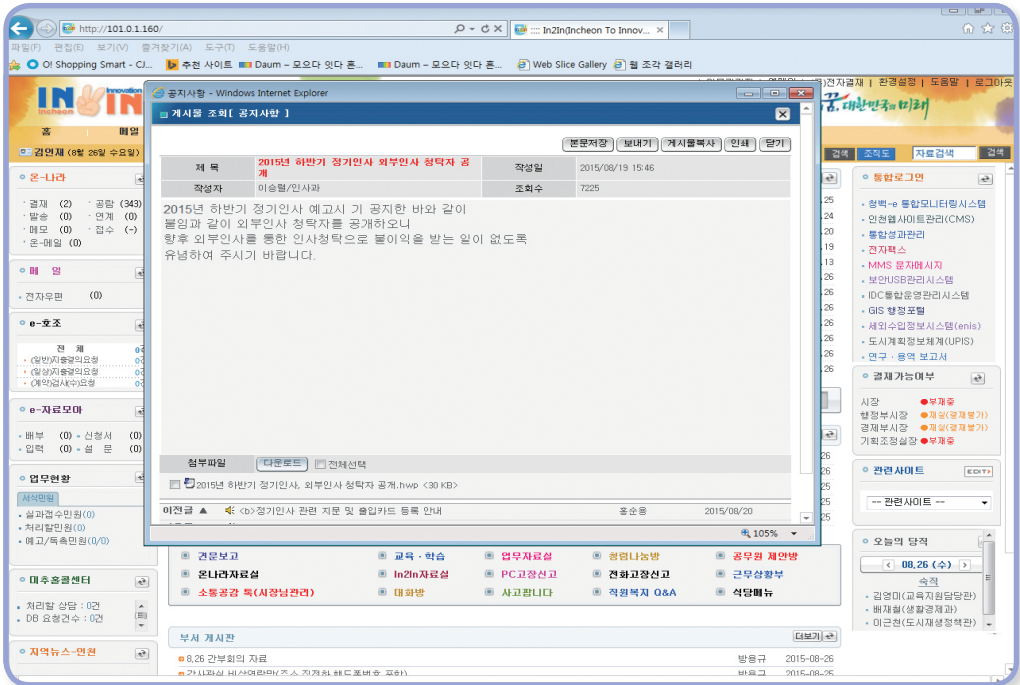
외부인사 청탁자 공개명단

연번	청탁자			청탁내용
	소속	직급	성명	
1	종합건설본부	5급	○○○	많은 외부인사를 동원하여 경제청 전보 청탁 ※ 지난 1월에도 인사문란 경력
2	상수도사업본부	6급	○○○	많은 외부인사를 동원하여 타 사업소 전보 청탁 ※ 청탁철회 권고에도 불구 미철회
3	보건복지국	5급	○○○	인재개발원으로 전보 청탁
4	건설교통국	6급	○○○	사업소 전보 청탁
5	상수도사업본부	6급	○○○	의회 사무처 전보 청탁
6	경제자유구역청	6급	○○○	2회에 걸친 전문보직 지정 반려에도 재차 전문보직 지정 청탁

붙임2 | 인사예고 화면 캡처



붙임3 | 청탁자 공개 화면 캡처



02



업무관련기업 투자금지 지침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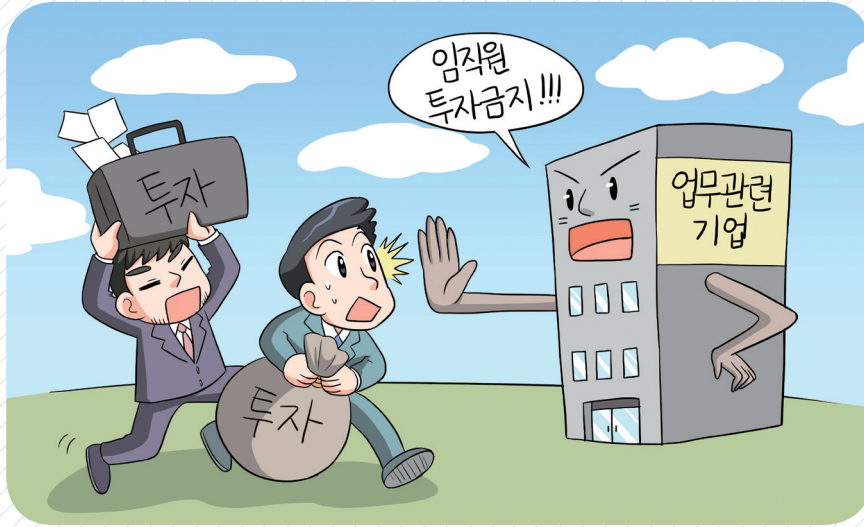
- “공공기관 최초로 업무관련기업 투자금지 세부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전사 및 협력사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여 원전 산업계에 대한 자정을 강화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추진경과

- 원전 품질보증 서류를 위조·납품한 사건이 적발되면서 한수원 직원 및 친인척의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업체와의 유착이 문제로 대두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직무관련 투자에 관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실천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체지침 제정 추진
 - 비상장주식 보유직원 자율 신고기간 운영('13. 6. 17.~'13. 7. 19.)
 - 비상장 협력회사 주식보유자 실태 감사('13. 6. 17.~)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13. 12.)
 - 세부실천지침 마련을 위한 전사 의견 수렴('14. 1. 9.~14.)
 - 「임직원 업무관련기업 투자금지 지침」 제정·공포('14. 1. 29.)
 - 비상장 투자직원 조치계획 수립·시행('14. 2. 10.)





주요내용

- 비상장주식 보유직원 자율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자진 신고 유도
- 비상장 협력사 주식보유자 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계약업무 부당처리 혐의가 있는 주식 보유 직원(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
-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업무관련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의 업무관련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등 보유 금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임직원 업무관련기업 투자금지 지침」으로 구체적 기준 마련 · 운영
 - 1조(목적)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이행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
 - 2조(적용 범위) 임직원
 - 3조(임직원의 직무관련기업 투자금지) ‘직무관련 타인의 기업’ 정의
 - 4조(신규임용직원에 대한 회사의 조치) 신규임용 임직원에 대한 투자현황 제출 의무화 및 직무회피에 관한 내용
 - 5조(회사 거래업체 등 자료 제공) 투자금지 협력회사 목록 공지 의무
 - ※ 감사실 주관으로 매년 협력회사 목록을 사내 업무포털에 게시



- 6조(감사, 감사결과 조치) 위반 시 징계조치 및 관련 임직원 명단 이사회 보고 내용 등
 - ※ 지침 공포와 병행하여 업무포털에 투자금지 메뉴를 신설하고 지침 및 Q&A 등 공지
- 비상장사 투자직원 조치계획 수립 · 시행
 - 매각 독려 및 매각 서약서 징구
 - 매각 불가 직원 직무회피 보직관리 시행 및 감사실 명단관리

성 과(기대효과)

- 99명 : 적극적 비리척결 의지표명과 지속적 계도로 자진신고 시행
- 100% : 전원 매각 완료
 - 비협력회사 및 친인척 소유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 2명 : 투자금지 위반 · 부당행위 의심직원 검찰고발
- 6명 : 현재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향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무회피 시행
- 공기업 최초 업무관련 투자금지 세부지침 제정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업무의 공정성 · 투명성을 제고
 - 실천지침 제정 공포 이후 투자 가능여부에 대한 감사실로의 문의가 증가하는 등 심리적 압박 및 계도효과 가시화

임직원 업무관련기업 투자금지에 관한 지침

2014. 1. 2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규정된 ‘영리업무의 금지 의무’ 중 제3호의 의무(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직원의 직무관련기업 투자 금지) ① 임직원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본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투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이란 투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이 소속한 부서에서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등 재정 보조

나.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소요제기, 계약요청, 계약과 관련된 심사,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의 감독, 계약이행 완료에 대한 검사, 계약목적물의 인수 등

다. 회사 또는 정부에서 추진한 회사 관련 연구개발사업, 부품개발사업 참여

라. 회사의 공급자 등록

마. 회사와 토지·건축물 등 비유동자산의 매매(賣買)계약 체결 또는 체결 준비

바. 그 밖에 기업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2. 본인이 소속한 부서에서 제1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각종 업무계획 반영, 예산 편성 또는 배정, 발전설비의 관리 또는 정비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3. 본인이 소속한 부서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하여 감사(監査), 인사관리, 법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4. 그 밖에 본인이 소속한 부서에서 제1호와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대하여 업무지원,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 ④ 제3항제1호에서 “본인이 소속한 부서”란 팀 또는 센터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정관·사규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는 모든 팀 또는 센터를 말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 중인 임직원은 파견된 기관·단체·부서를 추가하고, 파견 후 복귀한 임직원은 파견되었던 기관·단체·부서를 추가한다.

제4조(신규임용직원에 대한 회사의 조치) ① 회사는 신규임용 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목록을 제공하여 신규임용이 되기 전에 해당 기업체에 투자를 한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뒤, 그 기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부서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에 해당 기업체에 투자를 했던 임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로 취득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 상태를 없애야 한다.

② 임용되기 전에 해당 기업체에 투자를 했던 직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로 취득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 상태를 없앤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로 배치할 수 있다.

제5조(회사 거래업체 등 자료제공) 소관 본부장·실장 등은 매년 1월 중에 제3조제3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목록을 작성하여 상임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감사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업무전산망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지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감사결과 조치) ① 상임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이 이 지침에 위배하여 본인의 업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한다.

② 상임감사위원회는 이 지침에 위배하여 본인의 업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해 그 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 상태를 없애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임감사위원은 이 지침에 위배하여 본인의 업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사규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등의 문책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상임감사위원은 이 지침에 위배하여 본인의 업무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 임직원의 명단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제5조 중 “1월 중에”를 “3월 중에”로 적용한다.



업무관련 협력회사 비상장 주식 등의 매각 서약서

서약자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회사) (휴대)
매각대상 주식 등 ①	명의자		관계	
	협력회사명		액면가	
	주식 수		지분율	
	취득일		취득가액	
	매각시한	년 월 일		
매각대상 주식 등 ②	명의자		관계	
	협력회사명		액면가	
	주식 수		지분율	
	취득일		취득가액	
	매각시한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업무관련 협력회사 비상장 주식 등을 매각할 것을 서약하며 매각시한을 넘길 경우, 타 업무로의 전환 등 회사의 조치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신고자

(서명)

※ 매각대상 주식이나 지분이 여러 종류이거나 취득 가액 등이 여러인 경우에는 연결지를 사용한다.

03



청렴방명록 제도

- 이해관계자와의 불가피한 사적 접촉 발생 시 해당사항을 기록하는
자진신고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내부신고를 활성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추진경과

-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은 '17년까지 약 5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입찰참여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에 따라 예상되는 윤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비 필요성 부각
- '13. 5월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 차단을 위한 자진신고 채널인 '청렴방명록' 제도를 3단계 건설사업에 한해 운영 개시함
- 이후 제도이행 현황 검토결과에 따라 '14. 10월 3단계 건설사업 이외 전 업무로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신분보장 등 세부사항을 윤리규정(행동강령)에 포함하여 규정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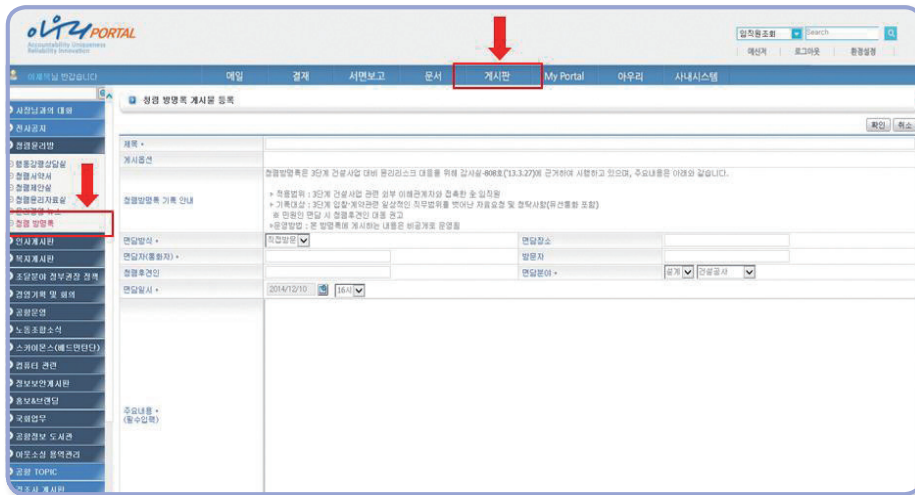




주요내용

-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청렴후견인* 대동(帶同)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사내시스템 내 '청렴방명록' 운영
 - 적용범위 : 직무관련 전 업무분야
 - 기록사항 : 면담일시, 면담방식(직접/유선), 면담자(통화자), 면담장소, 방문자(성명/소속), 주요내용
 - 운영방법 : 청렴방명록에 게시하는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윤리규정(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에 준하여 보장
 - 근거규정 : 윤리규정(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2
- * 청렴후견인 : 불가피한 사적 접촉 시 가능한 단독 면담보다는 복수로 면담을 가짐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부서 내 윤리실무위원 또는 상급/동료/하급자 등을 일명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대동토록 하는 제도

청렴방명록 캡처 화면



성 과(기대효과)

- '13. 5월 제도 도입 이후 '15년 4월 말 현재 총 122건(월평균 약 5건) 등록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자발적 내부신고 활성화를 통해 청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 신고(등록) 건수 연평균 약 60건으로 해당기간 부패(부조리) 신고 건수(15건) 대비 약 4배 해당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자와의 일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호의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 회합, 행사를 하는 것. 다만,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기타 일상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제공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이 사적인 접촉사항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분 보장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4



현지조사 직원의 향피·기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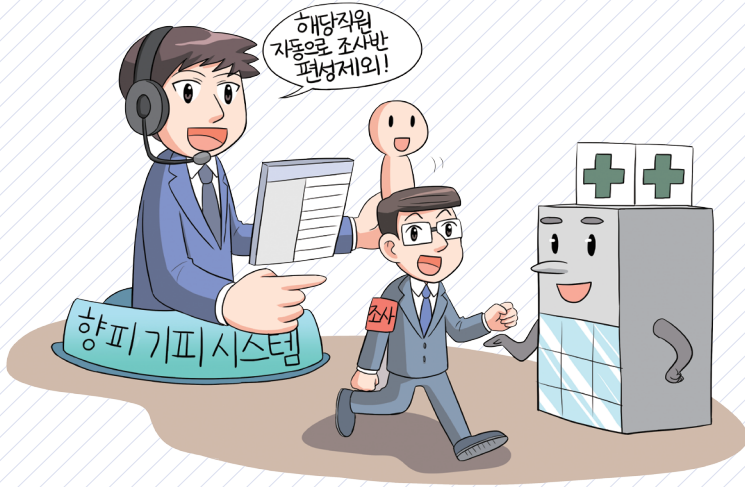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현지조사) 시 연고관계 등에 따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사전에 조사반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진경과

- '08년도 급여조사실 사업추진계획 보고('08. 2. 21.)
- 현지조사 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향피·기피 프로그램 구축 및 실무적용('08. 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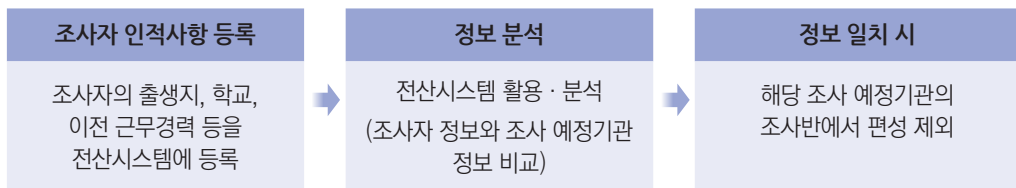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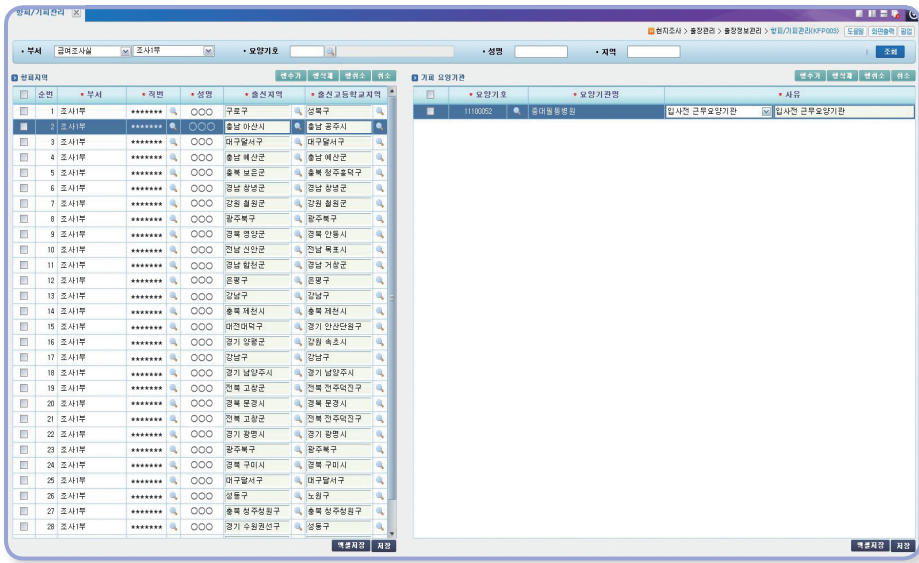
주요내용

- 직원 본인의 배우자 및 친족의 병·의원 개설 또는 입사 전 근무현황, 출신지역 현황을 내부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기관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자동으로 조사반에서 편성 제외
- 향피제(혈연·학연·지연 등)
 - 조사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 조사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운영하거나 종사자로 근무하는 병·의원
- 기피제(친분관계 등)
 - 회사 입사 전 근무 병·의원
 - 직원이 기피하는 병·의원(배우자의 친구, 은사가 운영하는 병·의원 등)
- 향피·기피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운영절차



운영 시스템 화면



성 과(기대효과)

- 조사자 이해충돌 원천 차단 및 심리적 부담 해소
 - 조사자가 피조사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청탁, 요청 등 원천 차단
 - 연고관계 등에 따라 조사자 및 피조사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감 해소
-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조사 수행
 -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환경 마련
- 향피·기피제의 철저한 운영으로 현지조사 관련 부패행위 발생 '제로'

최근 3년간 향피·기피 운영 현황

연도	조사인원(명)	대상인원(명)	적용인원(명)	적용률(%)
2012	85	38	38	100
2013	98	37	37	100
2014	118	49	49	100

05



알선·청탁 등의 금지 범위 확대

●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15.3월)하여 직무관련자 등 소개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청탁신고를 제도화하는 한편, 거래제한 직무관련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경과

- 알선·청탁 금지 강화 등 부정부패 방지대책 수립('15. 2.)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위한 부서 의견 조회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사내 법무실), 청렴옴부즈만 사전모니터링('15. 3.)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9차) 완료('15. 4.)

주요내용

- 알선·청탁 등 소개금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LH관련자' 정의 신설(제2조)
 - (LH관련자)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 없이 LH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자)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
- 알선·청탁 등의 소개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청탁 신고의 제도화 및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규정
 - (소개금지 범위 확대) 기존 직무관련자에서 LH관련자까지 포함



- (청탁신고 제도화 및 신분보장) 임직원은 청탁제의를 받은 경우, 사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신고인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을 의무화
- 거래를 제한하는 직무관련자와 제한 유형 범위를 확대

구분	당초	변경
거래제한 직무관련자	1. 직무관련자(4촌 이내 친족 제외) 2. 직무관련 임직원	1. 직무관련자(과거 직무관련자 포함, 4촌 이내 친족 제외) 2. 직무관련 임직원
거래제한 유형	1. 금전 거래 2.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현저히 낮은 금액 거래 포함)	1. 금전 거래 2. 유가증권 거래 3.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 4.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현저히 낮은 금액 거래 포함)

성 과(기대효과)

- 알선, 청탁 등 소개과정에서 악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부패 발생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
- 청탁신고를 제도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의무화함에 따라 임직원이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거래를 제한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와 제한 유형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청렴한 임직원의 거래문화 조성

06



친족의 계약입찰 사전신고 의무화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친족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추진경과

- 청렴한 계약체결 기반 마련을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13. 10. 15.)

주요내용

- 계약·입찰 시 임직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배우자, 친족 등)가 참여하여 특혜를 받는 등 부패 유발 요인 내재
- 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동강령 규정화를 통한 사전신고 의무화로 관련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한 계약·입찰업무를 수행

| 임직원 행동강령 |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③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임직원은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 과(기대효과)

- 소속 임직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 체결의 투명성 제고





02

건강한 공직풍토 조성

- ① 지역 농·축협 및 계열사 임직원 행동강령 도입 | 농협중앙회
- ② 행동강령 ONE-STOP 시스템 운영 | 국토교통부
- ③ 기관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수수 금지 | 우체국금융개발원
- ④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및 횟수 제한 강화 | 부산광역시
- ⑤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관리 강화 | 기술보증기금
- ⑥ 엄격한 외부강의·회의 등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01



지역 농·축협 및 계열사 임직원 행동강령 도입

-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지역 농·축협 및 농협중앙회 계열사 임직원들에 대한 행동강령 도입 및 교육 여부를 평가제도에 반영함으로써, 비위행위에 대한 범농협 차원의 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부패예방 사각지대를 축소합니다. ●●

[농협중앙회]

추진경과

- '2015년 농·축협 윤리경영 관련 업적평가 내용 알림' (15. 3.)
 - 1,160여 개 농·축협에 대해 임직원 윤리기준(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전체 도입 여부를 업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도입률을 제고
- '2015년 계열사 윤리지수(EMI) 평가 계획 알림' (15. 3.)
 - 26개 계열사에 대해 월별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실시 여부를 계열사 윤리지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행동강령 실행력 제고

주요내용

- 농·축협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업적평가 기준

구분	평가 방법	배점
임직원 윤리기준 도입	임직원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 윤리기준 전체 도입여부	△6점/1,000점 (미도입시 감점)



- 범농협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 실시(중앙회, 농·축협 공동)
 - 매일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 테마를 지정하여 전 직원 교육 및 준수 캠페인 실시
 - 농·축협 지점감사역이 교육실시 이행실태 매일 점검(준법 체크리스트)

시행월	실천 테마	관련 조문(행동강령)
2015년 1월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해	총칙
2월	금품 등 수수행위의 금지	제15조
3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
4월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8조
5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준수	제18조의2

- 계열사 윤리지수(EMI) 행동강령 관련 평가 기준

구분	평가 방법	배점
월별 행동강령 테마 실천운동 전개 및 교육	테마 실천운동 전개 및 교육실시 여부 ※ 월별 테마는 계열사 특성에 맞게 설정하여 추진 가능	4점/100점

성 과(기대효과)

- 범농협 행동강령 기준 마련
 - 공직유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농·축협 및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도입 및 교육으로 부패예방 사각지대 해소
 - ※ 농·축협 윤리기준 도입률 : 89.96%('14년 말 기준)
- 교육을 통한 행동강령 실행력 제고
 - 매일 정기적인 행동강령 테마 교육을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력 증진 및 실행력 제고

향후계획

- 농·축협 및 계열사의 행동강령 교육실시 여부를 업적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 강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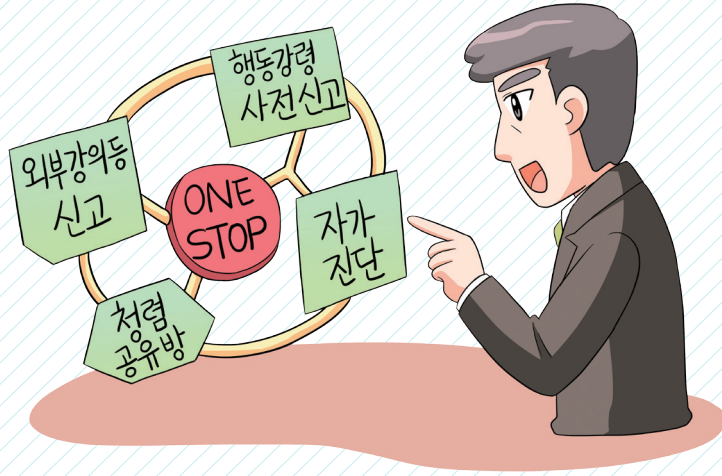
행동강령 ONE-STOP 시스템 운영 (‘국토교통인 클린 솔’ 운영)

- 내부망에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코너를 통합한 ‘국토교통인 클린 솔’을 설치·운영하여 직원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토교통부]

추진경과

- 행동강령 상담과 위반사항 신고를 위한 ‘내부공익신고센터’ 내부망 설치·운영(07.~)
- 기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자기보호센터(금품반환신고, 청탁등록),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등을 추가한 ‘국토해양인 클린 솔’ 운영(10. 8.)
 - ※ 자기보호센터, 외부강의 등의 신고, 청렴SOS, 조기경보시스템 등 운영
- 제26회 국무회의(11. 6. 4.) 시 ‘국토해양인 클린 솔’ 시스템 주요 코너와 운영실적 등 운영 현황 보고
- 행동강령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을 등록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청렴공유방’ 코너 추가(13. 3.)
-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인 클린 솔’을 ‘국토교통인 클린 솔’로 바꾸고 외부강의 신고도 온라인 신고 일원화(13. 5.)
- 행동강령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Q&A 코너’ 추가(15. 5.)



주요내용

-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코너를 통합하여 직원들에게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인 클린 솔' 운영
-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부망(솔넷) 메인화면 상단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여 서비스 중

국토교통부 내부망(솔넷) 메인 화면



‘국토교통인 클린 솔’ 코너 클릭 후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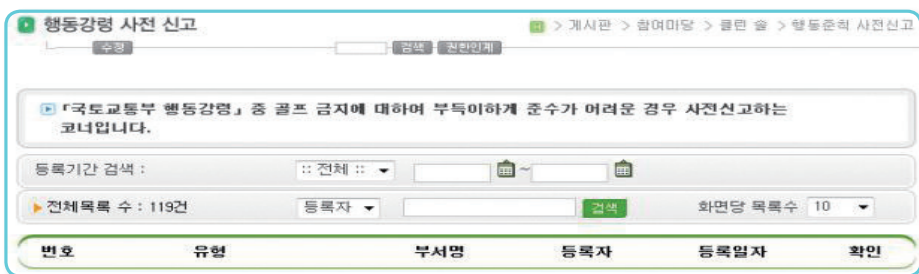


주요시스템 내용

1 행동강령 사전신고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 국토교통부 행동강령 중 골프 금지*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준수가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신고하는 코너
 - *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과의 골프와 직원 상호간의 골프를 금지
-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확인
 - ※ 신고확인이 되면 확인란의 '미확인'이 '확인'으로 변경되어 신고자 및 청렴업무 담당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음

‘행동강령 사전신고’ 클릭 후 메인 화면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2 외부강의 등의 신고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코너로 외부강의 신고대상, 강의대가 기준 등 주요내용도 함께 안내
 - 행동강령책임관은 전체 신고내용을, 신고자는 본인의 신고내용 일체를 볼 수 있음
 - 기간별, 기관(부서)별, 신고자별, 요청기관별, 신고일자별, 확인여부별 검색이 가능하여 현황 관리에 편의성 제고
 -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이 신고(신고누락·오류, 초과금액 등)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신고수정, 초과금액 반납 등) 후 재신고토록 요구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확인
- ※ 신고확인이 되면 확인란의 '미확인'이 '확인'으로 변경되어 신고자 및 청렴업무 담당이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음

'외부강의 등의 신고' 클릭 후 메인화면

외부강의 등의 신고

신고대상 : 대가를 받고 세미나, 토론회,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의 행위
 * 근무시간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대학에 출강한 외부강의, 회의 등도 신고 대상임
 제외대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요청한 강의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서울시, 광명시,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강의,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은 제외
 신고방법 : (본부)슬넷/기타/외부강의등의신고, (소속기관)자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등록기간 검색 : 전체

전체등록 수 : 6728건

번호	부서명	신고자	요청기관	활동유형	강의등 일시	신고일자	확인
6728							
6727							
6726							
6725							
6724							

신고를 위해 자료등록 클릭 후 '외부강의 대가기준' 팝업 화면

외부강의 대가기준

(단위: 만 원/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1시간 상한액	40(장관)·30(차관)	23	12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20	12	10	

※ 동 기준은 외부강의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예) 사무관이 ○○공사에서 3시간 강의시 (32만원=12만원+10만원+10만원)

확인

4 청렴SOS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제20조)

- 행동강령 등 위반사항 신고, 행동강령 상담 및 청렴 관련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코너 (QUICK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익명신고도 가능
 - ※ 익명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내부망 로그아웃이 되고 로그아웃된 상태에서 신고 가능

'청렴SOS' 클릭 후 메인화면

청렴 SOS(상담/제안/신고) > 게시판 > 참여마당 > 열린 숲 > 청렴SOS

조직 내 갈등과 예외사항(청렴·행동강령 관련)을 행동강령책임권과 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제도개선사항의 제안과 건의를 통해 청렴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또한, 직원의 부조리·비위를 신고하여 조기 치유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가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목록 수 : 2건 제목 검색 화면당 목록수 10

번호	제목	부서명	등록자	등록일자
2	조사 회신 [0]	감사담당관	장기영	2014/01/15
1	외부강의신고 대상 출장비 지급 관련 [0]	감찰팀	장기영	2012/05/29

페이지 1

실명으로 자료등록 익명으로 자료등록

'익명으로 자료등록' 클릭 후 화면

청렴 SOS(상담/제안/신고) > 게시판 > 참여마당 > 열린 숲 > 청렴SOS

조직 내 갈등과 예외사항(청렴·행동강령 관련)을 행동강령책임권과 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하고, 제도개선사항의 제안과 건의를 통해 청렴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또한, 직원의 부조리·비위를 신고하여 조기 치유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어 가는 기능을 합니다.

전체목록 수 : 2건 제목 검색 화면당 목록수 10

번호	제목	부서명	등록자	등록일자
2	조사 회신 [0]	감사담당관	장기영	2014/01/15
1	외부강의신고 대상 출장비 지급 관련 [0]	감찰팀	장기영	2012/05/29

페이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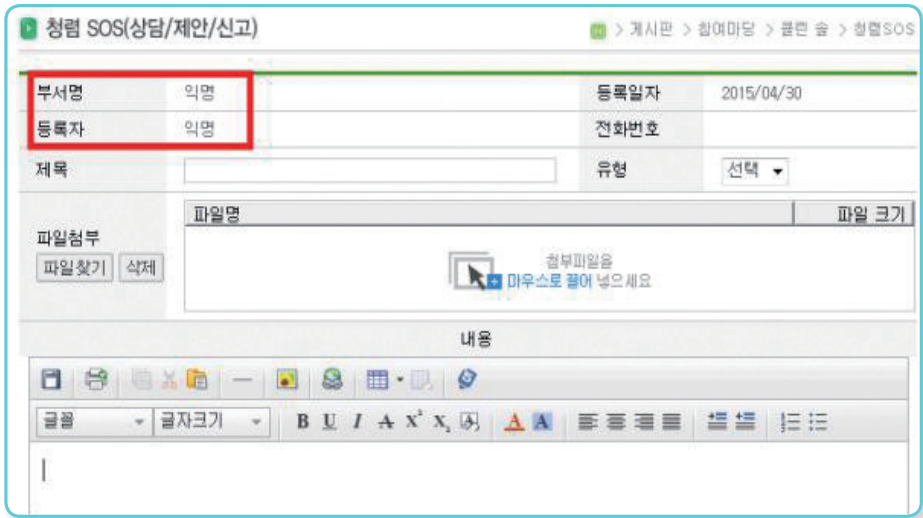
실명으로 자료등록 익명으로 자료등록

할 페이지의 메시지

솔넷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청렴SOS 코너에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익명으로 자료등록’ 클릭 후 화면



5 청렴공유방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자료(동영상, PPT 등) 및 홍보자료(리플릿 등) 등을 등록하고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코너

‘청렴공유방’ 클릭 후 메인화면



건전한/공직풍토 조성

성 과(기대효과)

- 지속적인 내부교육, 매뉴얼 제작 배포 등으로 전 직원들의 관심 속에 시스템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있음
 - ※ 외부강의 신고(6,729건), 자기보호센터(31건), 청렴SOS(21건), 청렴공유방(613건)
- 행동강령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보다 쉽게 행동강령 신고·상담과 접하게 되고 개인의 청렴생활 실천에 도움
- 특히, 자기보호센터는 증거자료 활용을 통해 음해성 제보와 택배 등 일방적 금품 제공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
- 지속적인 시스템 및 자료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03



기관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수수 금지

- 기관장(원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강의료와 더불어 원고료·여비 등 일체의 대가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청렴한 외부강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

추진경과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직무관련 외부강의가 부패사건의 통로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의 대가수수를 금지하는 규정 마련·시행(15. 5. 6.)

주요내용

- 기관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가수수 금지
 -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의 승인·신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위 내규에 정하여 운영
 - 해당 하위 내규인 「겸직제한 및 외부강의·회의등의 승인·신고 관리지침」 제7조제2항에 원장의 직무관련 강의·강연에 대해서는 강의·강연료 및 원고료·여비 등의 대가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운영
- 기관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대하여 강의료와 더불어 원고료 및 여비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 증대



성 과(기대효과)

- 기관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에 따른 대가수수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발생 원천 차단
- 행동강령 이행 및 직무 청렴 추진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 제고

| 붙임 | '기관장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수수 금지' 관련 근거 내규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복무처리기준, 대가수수기준 등 외부강의·회의 등의 승인·신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검직제한 및 외부강의·회의등의 승인·신고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복무세칙」 제3조(직원의 의무) 제5항에 정한 검직제한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항에서 정한 신고 기준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실시근거 및 시간·대가 제한) ① (생략)

②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는 외부강의의 경우는 시간당, 회의 등의 경우는 회당을 기준으로 5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제2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원장의 직무관련 강의·강연에 대해서는 강의·강연료 및 원고료·여비 등의 대가수수를 금지한다.

〈별표 제2호〉

직무관련 외부강의의 대가기준

(단위: 천원/1시간)

구 분	원장	1급	2급 및 선임(팀장) 이상	3급 및 선임(팀원) 이하	비 고
상한액	대가수수 (원고료·여비 포함)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금지	200	120	100	

04



외부강의 · 회의 등의 대가 및 횡수 제한 강화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관련 규정을 정비(신고대상 확대, 대가기준 적용 범위 확대, 강의 횡수 제한 등)하여 지나친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참여에 따른 고유 직무에 대한 누수를 예방하고, 고액의 대가가 부정한 뇌물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부산광역시]

추진경과

-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개정안 보고(14. 8. 22.) → 노조협의(14. 8. 24.) → 입법예고(14. 8. 27.~9. 16.) → 개정안 확정보고(14. 9. 22.) → 조례규칙 심의(14. 9. 25.) → 공포(14. 10. 15.)
- 행동강령 규정 개정사항 홍보 및 교육
 - 전 직원 대상 행동강령 개정사항 청렴퀴즈 실시(14. 10. 1.~7.) : 참여 2,572명
 - 간부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진단 실시(14. 10. 20.~22.) : 참여 529명
 - 홈페이지 및 SNS(트위터 등 5종) 활용 개정사항 시민 홍보
 - 기자단 대상 행동강령 개정사항 시정브리핑(14. 10. 14.)
 - 건축직 공무원 대상 개정사항 교육(14. 10. 21.)
- 외부강의 · 회의 관리시스템 구축 · 운영
 - 관리시스템 구축(14. 10. 13.~10. 17.)
 - ※ 주요기능 :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사항 입력관리, 신고서 출력 등
 - 시스템 이용 안내 공지(14. 10. 21.~10. 24.)
 - 시스템을 통한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 접수 시작(14. 10. 27.~)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공직자의 외부강의·회의 등을 명목으로 외부 기관·단체에 금전을 요구하거나 특정 이해 집단과 부당하게 유착되는 등의 부패를 차단하고, 지나친 외부강의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외부 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통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12. 5. 14.)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대가기준(상한액)을 행동강령에 반영한 바 있음
- 그러나, 공직자의 잦은 외부강의 참여와 고액의 대가 수령으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연료 명목으로 '손쉬운 용돈벌이'를 하거나 '공인된 떡 값'을 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

- ✓ ○○○ 직원 외부강의 787건에 강의료 3억원 넘어('13년 언론보도)
- ✓ ○○○ 직원 사전승인 없이 외부강의, 출장비도 챙겨('14년 언론보도)
- ✓ ○○○ 직원 외부강의 대가와 출장비 이중 수령('14년 언론보도)

- 지난 '14. 4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실태에 대한 우리 시 자체감사 결과 75명 156건의 미신고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 특히 대가기준 및 횡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심사·자문의 경우 고액의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하여 직무관련 기관에 평가원으로 참여하는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을 뿐 아니라,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기준 강화
 - (신고대상 확대) 당초 강의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나, 이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직원들의 잦은 외부강의 참여를 통제하고, 전체 외부강의 현황이 총괄적으로 신고·관리되도록 개선
 - (대가기준 적용 범위 확대) 당초 권익위의 권고대로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에만 대가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전체 외부강의·회의 등으로 확대 적용하여 심사·자문 요청 등을 매개로 한 고액의 대가 수령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 (강의 횡수 제한)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하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지나친 외부강의 참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및 현황관리 강화
 - (신고처 일원화) 본청과 각 직속기관 및 사업소별로 신고접수 및 관리하던 것을 조사 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부정·부실 신고의 사전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 실태가 총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소방·상수도본부, 의회사무처는 개별 관리)
 -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시스템을 구축, 시스템으로 신고 및 관리토록 하여 부실 또는 오류 신고 사례를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 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개선

● 외부강의 신고관련 규정 개정 내용(요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근거
신고대상	강의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대가기준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에만 대가기준 적용	심사, 자문 등을 포함한 전체 외부강의 회의 등에 적용	행동강령 제17조 제3항
강의횟수	제한 없음	월 3회로 제한	행동강령 제17조 제4항
신고처	각 기관장	감사관 (소방, 상수도, 의회는 자체)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

성 과(기대효과)

- 지나친 외부강의·회의 등의 참여에 따른 고유 직무에 대한 누수를 예방하고, 고액의 대가가 부정한 뇌물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시스템을 개선하여 신고 및 관리사항을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의 원천적인 차단과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기여
- 부산광역시 행동강령 개정 관련 다수 언론 보도
 - 부산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한국일보, '14. 10. 14.)
 - 부산시 '가장 엄격한 직원 윤리강령 시행' 선언(노컷뉴스, '14. 10. 14.)
 - 그 외 KBS TV, KNN, YTN, CBS-R,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뉴스 등 다수

『외부감의·회의 등 관리시스템』 화면구성

메인 화면

번호	신고일자	신고부서	신고자	회의유형	활동유형	감의/회의일시
1	2014-10-14	부산시청민사업소/여성가족정책관/ 000 000	000	교육과정	감의,강연	2014-11-05 9:00 ~ 2014-11-05 11:00

관리 화면(등록, 수정, 삭제, 신고서 출력)

성명	000	소속	부산시청민사업소/여성가족정책관/ 000 000	
직위(직급)	지방서기관			
외부감의회의유형	<input checked="" type="radio"/> 교육과정 <input type="radio"/>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 <input type="radio"/> 회의 <input type="radio"/> 기타 ()			
활동유형	<input checked="" type="radio"/> 감의,강연 <input type="radio"/> 발표,토론 <input type="radio"/> 심사,평가,자문,의결 <input type="radio"/>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부산 000 000 000	대표자	123- 456 -789
	담당부서		연락처	051-510-1592
요청사유	2014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감의 요청			
장소	부산 000 000 000			
일시	2014-11-05 일 ~ 2014-11-05 일	일출신고	일(역)출근 횟수 : 2회 1회 출근 시간 : 2시간	
대가	출역 : 7만원 (※ 1회 평균 대가: 2만원) (교출비: 만원, 일교료: 만원, 재출비: 만원 포함)			

신고일자: 2014-10-14

05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및 관리 강화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 · 회의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횡수를 파악하고, 1인당 연간 횡수 및 대가 총액을 제한하여 무문별한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실시를 방지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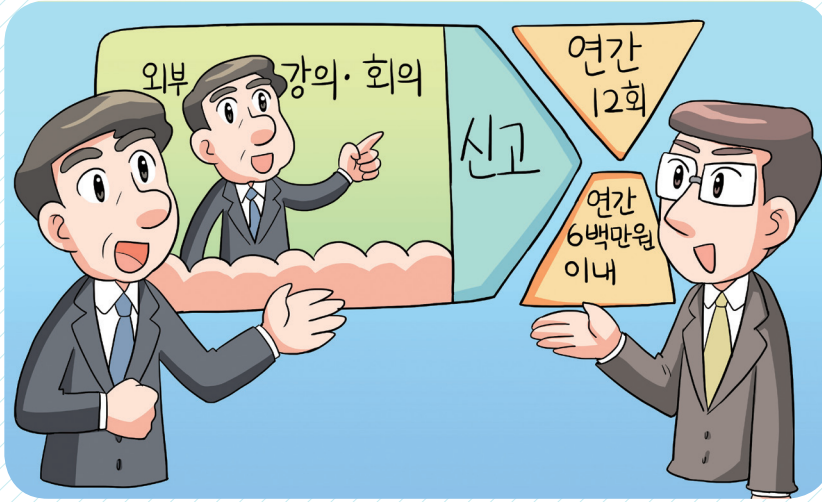
추진경과

- 외부강의 · 회의 등 신고대상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 개정('14. 3. 21.)
- 외부강의 · 회의 등 횡수 · 대가 제한 등 행동강령 개정('14. 10. 31.)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금융위원회의 기술금융 추진 및 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대외기관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 직원들에 대한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요청도 증가하고 있으나,
 -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신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외부강의 · 회의 등 횡수 파악이 어려움
- 또한, 외부강의 대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나, 토론 · 심사 · 자문 등 전체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연간 실시 횡수 및 대가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



| 개선방안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
-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 등도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제한코자 연간 12회, 대가수수 총액도 연간 6백만원 이내에서 실시
- 소속 부실점장 등이 직무에 영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성 과(기대효과)

- 개인의 실질적인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를 파악하여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외부강의·회의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

06



엄격한 외부강의 · 회의 등 운영

●● 직무와 관련된 모든 외부강의 · 회의 등에 일체의 대가수수를 금지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 · 회의 등은 대가 상한기준을 적용하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 회의 등에 횡수 · 시간 제한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외부강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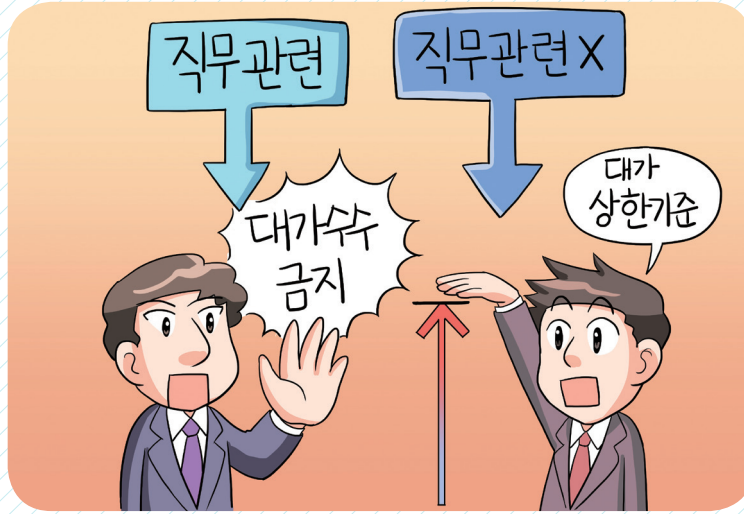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추진경과

- 직무관련 외부강의 · 회의 등에 대하여 일체의 대가수수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행동강령 마련 · 시행(15. 3. 26.)
- 「외부강의 · 회의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세부기준 마련 · 운영(15. 3. 26.)
- 국가 · 지자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 회의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 회의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행동강령 개정(15. 7. 31.)

주요내용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대가수수 제한 확대
 -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외부강의 · 회의 등은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일체의 대가수수를 금지함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외부강의 · 회의 등은 대가 상한기준*을 적용
 - *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관련 외부강의 · 강연에 적용하도록 권고('12. 5월)한 대가 상한기준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은 연 10회(월 3회),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외부강의·회의 등을 통한 고액의 대가수수를 제한
-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체계 강화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에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
 -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회의 등은 각 실·국 주무부서에서 출강현황을 관리하도록 함
 - 감사담당관은 월별로 위원회 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실태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점검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함

성 과(기대효과)

- 반부패·청렴정책 총괄기관으로서 타 기관에 비해 엄격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신뢰 확보에 기여

| 불임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회의 등 관련 지침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한 관리지침

[시행 2015.12.1.]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91호, 2015.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파견중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3조(허가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강의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외부강의·회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및 업무형편 등을 엄격히 확인한 후 소속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강의·회의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대학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는 경우 또는 대가의 유무 및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신고)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이용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연 10회(월 3회),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에 출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 청렴연수원 소속공무원이 연수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4조제2항의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1항에 따른 횟수·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복무) ① 외부강의·회의등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유출 등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강의·회의등에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월별로 외부강의의 실태를 점검하여 분기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실·국의 총괄부서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직무관련 외부강의·회의등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등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2 '외부강의·회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03

위반자 제재
강화 및
청렴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 ① 반부패·청렴 유공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 경상남도교육청
- ② 승진심사 시 「청렴가점제」 운영 | 한국남부발전(주)
- ③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 공정거래위원회
- ④ 부패행위 제안·주선자 징계처분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01



반부패 · 청렴 유공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청렴 유공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각급 기관의 청렴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경상남도교육청]

추진경과

- 반부패 ·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청렴 유공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가점 부여 필요성 대두
- 청렴 유공자 전보특례에 대한 근거 마련('15. 4. 6.)
- '15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변경('15. 3. 23.)
- '15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침 변경('15. 4. 13.)





주요내용

- 청렴 유공자 전보특례에 대한 근거 마련
 - 경상남도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 제19조(전보특례) : 부패신고(금품수수 10만원 이상, 공금횡령·유용 100만원 이상) 및 청탁 등록(100만원 이상) 등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은 전보 희망지로 우선 전보 할 수 있음
- '15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변경

청렴 유공 가점대상

- ① 부패공익신고자 (감사관에 접수된 자) : 총점에 10점 가산
- ② 100만원 이상 청탁등록자 (감사관에 접수된 자) : 총점에 10점 가산
- ③ 청렴활동 유공 표창 수상자 : 총점에 5점 가산
 - ※ 감사관실로부터 통보받아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가산
 - ※ 유공 표창자는 직무실적 평가서 '포상실적'에도 함께 반영

● '15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침 변경

〈경남교육청 반부패·청렴 유공 실적 인센티브 반영〉 - 본인 총점의 5% 비율을 가산

1. 부패공익신고자 (감사관에서 통보된 자) (예시: 본인 총점 90점 + 4.5점(5%)가산 = 94.5점)
2. 100만원 이상 청탁등록자 (감사관에서 통보된 자)
3. 청렴마일리지 유공 표창 수상자 ('15년부터는 청렴활동 유공 표창 수상자)
 - ※ 감사관실로부터 통보받아 가산점 확인하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유공 표창자는 '포상실적'과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감사관 요청으로 '15년도 반부패·청렴 정책이 반영된 항목이므로 반드시 반영 (필수)

성 과(기대효과)

- '15년도 청렴 유공 지방공무원 6명 중 상위 직급 승진자 1명을 제외하고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 반부패·청렴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청렴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02



승진심사 시 「청렴가점제」 운영

- 조직 상하간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간부에 의한 청렴문화 확산을
유인하기 위해 부장급 이상 승진 심사 시 기존 청렴마일리지 이상이면
청렴가점을 부여합니다. ●●

[한국남부발전(주)]

추진경과

- '13년 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4년 말 부장급 이상 승진에 적용

주요내용

- 인사관리규정 개정 : 부장급 이상 승진 시 청렴가점 적용

인사관리 규정

- 가. 기본자격사항 산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청렴활동 실적에 대해 가점한다.
나. 세부기준은 청렴 인센티브 운영지침에 따른다.

- '14년 부장급 이상 승진 시 적용실적 : 청렴 기준마일리지 100점 이상

승진대상자	승진대상자 중 청렴가점 부여인원	최종 승진자 (청렴가점 미부여자 : 3명)	가점자 중 승진자 수
190명	116명	35명	32명



성 과(기대효과)

-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팀장급들의 자발적인 청렴활동 유도
- 중간 간부의 청렴정책 참여로 기업 내 청렴인프라 확산

향후계획

- 차장급 승진 시에도 청렴마일리지 승진 가점화 확대 추진 예정



03



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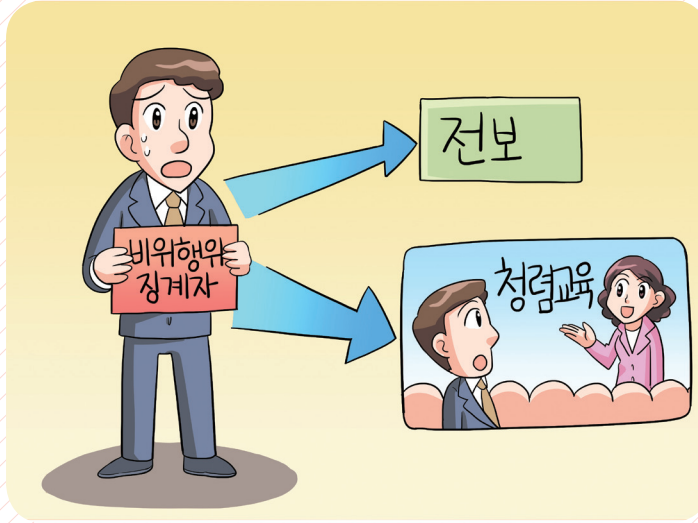
-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경고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전보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의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진경과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이하 '감사·감찰 조치기준') 개정('13. 10. 1.)을 통해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한 전보조치 및 교육이수 명령제 도입
 -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관련 규정





주요내용

- 감사·감찰 조치기준 중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내용을 개정하여 청렴의무 위반자(금품·향응을 수수한 자)에 대하여 주의·경고 이상 제재처분 이후 비사건부서로 전보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 집합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명령

감사·감찰 조치기준

1. 부패행위자의 처리기준

가. 징계기준

-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비사건부서로 전보조치 (비사건부서 근무자는 다른 비사건부서로 전보)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 집합교육 (4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성 과(기대효과)

- 부패행위자를 비사건부서로 전보조치하여 부패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

04



부패행위 제안·주선자 징계처분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 요구제를 도입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추진경과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이하 '감사·감찰 조치기준') 개정(13. 10. 1.)을 통해 금품·향응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관련 규정

주요내용

- 감사·감찰 조치기준 중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내용을 개정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를 다른 직원에게 제안하거나 주선한 직원에 대해 징계 시 가중조치(한 단계 상향 처분)
 - 위원회 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청사관리소에 청사출입 제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감사·감찰 조치기준

1. 부패행위자의 처리기준

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제안·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상향 징계처분 요구

-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의례적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중징계 대상이 되는 수수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
 - (개정전) 10~100만원 견책, (개정후) 10~50만원 견책, 50~100만원 감봉·정직

성 과(기대효과)

- 금품·향응 수수 제안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다수의 직원이 부패 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04

교육 · 상담을
통한 반부패
책임문화 확산



- ① 행동강령 사전·사후 컨설팅 「클린 서포터즈」 운영 | 교통안전공단
- ② 알기 쉬운 「의원 행동강령 해설집」 발간 | 부산광역시의회
- ③ 맞춤형 In-Time 정보 서비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④ 행동강령 준수안내 e-mail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 한국전력공사

01



행동강령 사전·사후 컨설팅 『클린 서포터즈』 운영

-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으로 행동강령 준수를 유도하고, 공단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깨끗한 조직문화를 실현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추진경과

- 교통안전공단 『클린 서포터즈제』 도입·운영(11. 4.)
 - 사내 인트라넷(Ep) '클린 서포터즈 신고센터' 운영

내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와 클린 서포터즈 외에는 알 수 없도록 권한(쓰기, 읽기, 열람 등) 제한

※ 감사처-654(2011.4.13.) '클린 서포터즈 운영계획 알림'

- 클린 서포터즈의 행동강령 사전·사후 컨설팅 기능 확대('12~'14년)
 - '행동강령 상담코너', '상담사례 댓글달기' 사례별 컨설팅
 - 내부공익(행동강령) 신고코너 자진신고 사안에 대한 컨설팅

(기존)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사후 조치활동 위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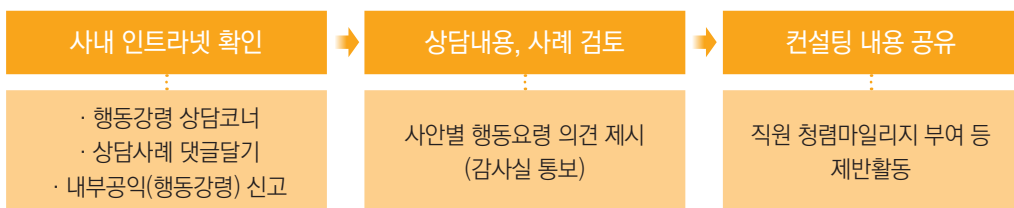
(개선) 행동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

- 클린 서포터즈 인력 확충 및 운영 정비('15. 4.)
 - 한국투명성기구 임원·법조인으로 인력 보강, 활동 재정비(1인 → 3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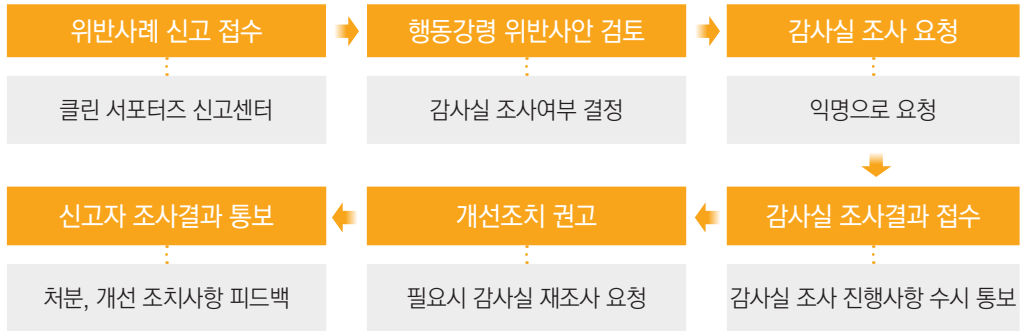


주요내용

- 클린 서포터즈 설치 및 운영
 - 이사장 직속으로 임기 2년간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 전개
- 직무 및 권한
 - 행동강령 준수 유도를 위한 상담
 - 공단 내부의 공익신고 접수·검토 및 조사여부 결정권
 - 감사실 조사 요청 및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 요청권
 - 신고자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조사 결정사항 통보 등 제반 활동
 - ※ 조사 요청 및 조사결과 통보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
- 업무처리절차
 - 행동강령 준수 상담 및 자진 신고사안에 대한 컨설팅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안에 대한 조사 요청 등 사후관리



● 활동사항 (<붙임> 클린 서포터즈 활동사항 참조)

• 행동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컨설팅

구 분		'12년	'13년	'14년	'15. 4.	비고
사전예방	개인별 '행동강령 상담코너' 자문	24건	19건	19건	9건	수시
	업무수행 시 발생가능한 사례별 컨설팅	2건	12건	12건	4건	월 1회
사후조치	자진신고 사안에 대한 컨설팅	5건	8건	4건	4건	수시

• '클린 서포터즈 신고센터' 내부신고 건에 대한 검토 및 조사 요청 수행

※ 사내 포털(Ep)상에 전용메일 계정 지원

• 클린 서포터즈 '행동강령준수 SMS' 발송(매월 1회)

- 매월 내부직원 VOC 수렴, 개선 필요사안을 시의 적절하게 SMS 송출

※ '15. 4. 27, 5. 6. 시범운영 시행 후 매월 발송



성 과(기대효과)

- 클린 서포터즈제 도입 후 운영 확대를 통해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유도
 -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활동 위주 운영에서 행동강령 준수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확충하여 행동강령 위반사례 감소

2014년도 국토교통부 주관, 공직복무관리평가 ‘최고등급(우수)’ 달성

※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8154(2014.12.17.) ‘2014년도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 알림’

| 불임 | 사내 인트라넷(Ep)을 통한 클린 서포터즈 활동사항

**행동강령 상담코너
자문**

**업무수행 관련
사례별 컨설팅**

**내부공익(행동강령)
신고 자문**

**클린 서포터즈 운영
'클린 서포터즈
신고센터'**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신고제도 운영사례

02



알기 쉬운 「의원 행동강령 해설집」 발간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해설서’를 전국 최초로 제작·발간하여,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의원 스스로 규범을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자정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추진경과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해설서 발간·배포('14.11.10.)
 -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회사무처,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배포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의원 행동강령 해설집 발간
 - 포켓용으로 제작하여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례와 삽화, 풍부한 예시를 통해 행동강령 조례를 쉽게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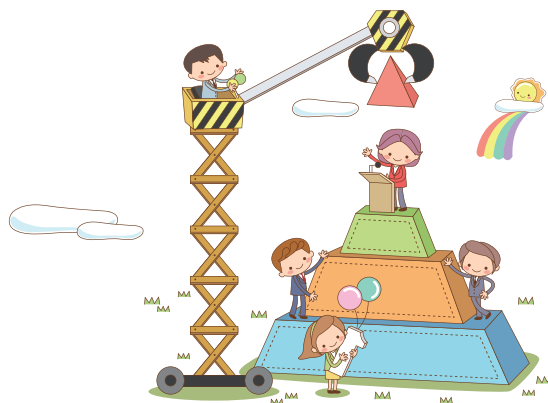
해설집 주요 내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법적근거 및 목적, 조례 제정 추진경과 및 배경
- 15개 행위기준 주요내용 및 조문별 해설
- 행동강령 조례 위반 시 징계절차 및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비교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관계
-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비교
- 주요 지적 및 부적정 사례, 조례 전문 등



성 과(기대효과)

-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고 위반행위 최소화



03



맞춤형 In-Time 정보 서비스

●● 다양한 업무수행 형태별로 부패발생 요인과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이 상이하므로 업무수행 형태별로 맞춤형(In-Time)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추진경과

- 업무별 Risk요인 발굴 개선방안 도출 시 착안(15. 2.)
- 주요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15. 3.)



- 윤리감사실은 공유된 일정에 맞추어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In-Time)에 활동 당사자에게 문자로 업무활동별 준수해야할 행동강령을 안내

활동사항	업무활동별 행동강령 안내 문자 예시
인사위원회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원의 임용·승진·채용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해외출장자	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거나 유흥주점 등에 출입, 향응·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계약심의·평가자	계약심의·평가 중 직원은 입찰·계약 및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회의출장자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는 임직원은 사전 신고절차를 준수하고 대가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인증심사출장자	직원은 인증심사를 위한 업체 방문 시 해당업체의 편의 및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휴기간 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취약시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성 과(기대효과)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업무활동별 사전 일정 공유시스템은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
 - 업무활동 대상자별 활동시점에 맞춤형 행동강령 정보를 안내해 줌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
- '15년 10월 현재, 총 6,277명의 업무활동별 대상자에게 214건의 맞춤형 행동강령 정보 안내

04



행동강령 준수안내 e-mail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이행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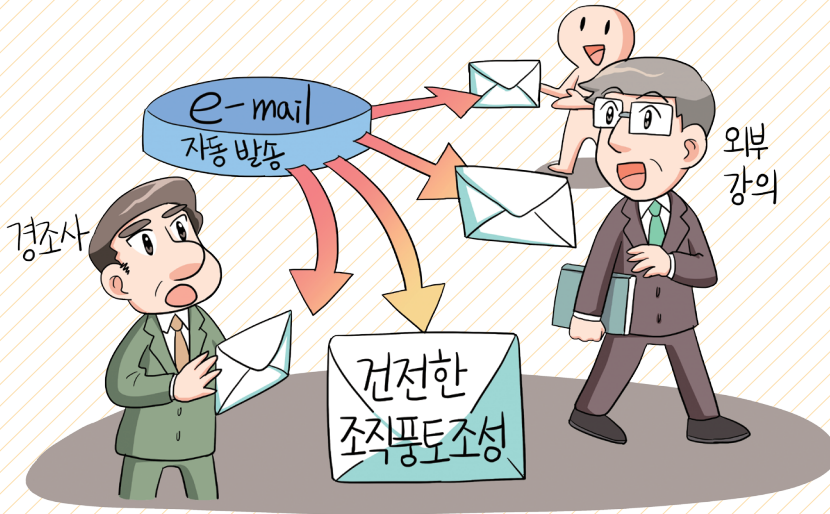
- 행동강령 준수안내 e-mail 자동발송 시스템 개발(13. 3. ~ 5.)
- 행동강령 준수안내 e-mail 자동발송 시스템 운영(13. 5. ~ 현재)

주요내용

- 시스템 운영내용

구분	경조사	외부강의
통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조 대상 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강의 신고자
통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조사 통지 가능 대상 통지방법 및 친족의 범위 경조금품 수수기준 경조사 관련 Q&A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 및 근태처리 기준 신고 및 신고제외 대상 외부강의 대가수수 기준 외부강의 관련 Q&A 등
통보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경조사 등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외부강의 시스템 신고 시
통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e-m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e-mail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 중인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당시 대가 미정의 경우*

* 신고시점에서 강의료가 확정되었으나 '외부강의 대가수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메시지 출력 및 승인요청단계 이행 불가



- 시스템 운영실적
 - 경조사 e-mail 발송 : 약 4,050건('13. 5. ~ '15. 5.)
 - 외부강의 e-mail 발송 : 2,649건('13. 1. 1. ~ '14. 12. 31.)

성 과(기대효과)

- 소속 직원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이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건강한 조직풍토 조성에 기여함



| 붙임1 | 경조사 등록 시 e-mail 통보내용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안내

본 메일은 KEPCO-EP에 경조사를 등록하신 임직원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첨부된 임직원 행동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직원 상호간 부담이 되지 않는
검소한 경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동강령 관련 조문

- 제22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관련 조문 보기](#)

○ 행동강령 Guide line

- 경조사의 범위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경조사의 통지방법
- 친족의 범위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Guide line 세부내용 보기](#)

○ 행동강령 FAQ

- Q 직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회사 주변의 식당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가요?
- Q 경조사 통지시 직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가 가능한가요?
- Q 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자들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 Q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kepco.co.kr)를 통하여 소속기관 직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가요?
- Q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항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 Q 기관장 명의로 10~15만원 상당의 화환을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보낼 수 있나요?
- Q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나요?
- Q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부내용 보기](#)

| 붙임2 | 외부강의 신고 시 e-mail 통보내용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안내

본 메일은 ERP시스템에서 외부강의 또는 회의 등을 신고하신 임직원들에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첨부된 임직원 행동강령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나친 외부활동으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강의대가 등을 수수하여 대내·외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강령 관련 조문

-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관련 조문 보기 >](#)

행동강령 Guide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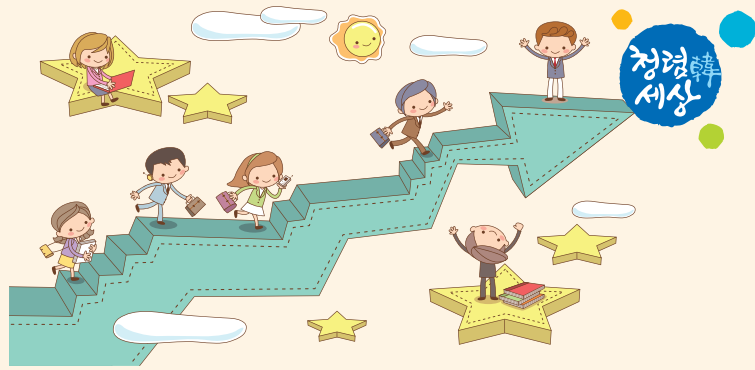
- 승인 및 근태처리기준
- 신고대상 외부활동
- 신고제외 대상
- 사전신고 누락 혹은 부정확한 경우
- 신고기관 : 소속기관의 장(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
- 강의료 수수한도

[Guide Line 세부내용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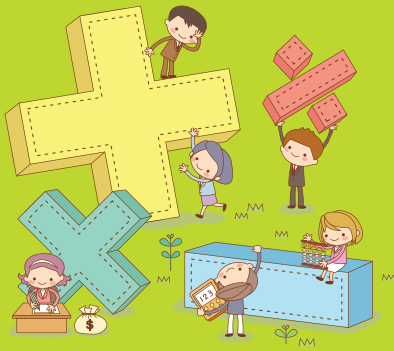
행동강령 FAQ

-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회의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나요?
- 겸직허가를 받아 외부강의·회의 등에 나가고 있는 경우에도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소속 부서의 장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근무시간 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가요?
- 직원 甲(갑)이 매주 2시간씩 사립대 강의를 나갈 때 매월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괄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 배전 업무 전문가인 乙(을)차장이 대한전기협회에서 과제평가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세부내용 보기 >](#)



2015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부록

2010년~2012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부록에 수록된 내용은 2010~2012년에 선정된 우수제도 사례를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자료(위원회 자료<부패방지<행동강령<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청렴마일리지 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 2 행동강령 준수 자가측정 | 산림청
- 3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전산시스템 | 노동부
- 4 특화된 행동강령 홈페이지(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 강원도
- 5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 경기도
- 6 청렴(행동강령) 관련 공모 활용 | 한국공항공사
- 7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 | 서울 도봉구
- 8 청렴(행동강령)교육 의무화 | 조달청
- 9 승진시험 시 행동강령 문항 반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 10 청렴 문자 알리미 운영 | 경북 영주시

01

2010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 11 동영상 청렴메시지 | 서울 강남구
- 12 기관 행동강령 운영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
- 13 행동강령 평가인증 제도 | 서울 강남구
- 14 클린민원 안내문 배부 | 경기도
- 15 청렴커뮤니티 결성 | 관세청
- 16 클린모니터요원 운영 | 전남 영광군
- 17 기관장 퇴직 전 감사제 | 광주광역시교육청
- 18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 경기 성남시
- 19 분임 행동강령책임관 및 청렴지기 운용 | 한국공항공사
- 20 행동강령 위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 병무청
- 21 공정한 징계처분을 위한 동료 사전심의제 | 한국철도공사
- 22 직무청렴계약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3 청렴배심원 제도 | 한국철도공사

01



청렴마일리지 제도

●●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그 결과를 연말 조직(과단위) 성과평가에 반영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청렴마일리지 부여 기준
 - 플러스 마일리지
 - 반부패 시책 수범사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행동강령 상담, 금품반환 신고, 반부패·청렴교육 참석 등
 - 마이너스 마일리지
 - 행동강령 위반, 복무점검 적발, 불친절 공무원 등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감점 적용

- 부서 성과평가 반영 및 포상
 - 개인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산출 후, 그 결과를 조직성과 공통지표로 반영



02



행동강령 준수 자가측정

“청렴도 자가측정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합니다.”

[산림청]



주요내용

- 행동강령 문제풀이를 통한 행동강령 규정 이해 향상
- 자가측정 문제
 - 주요 행동강령 관련 규정, 경조사 등 일상생활에서 위반하기 쉬운 관련 문제 등
 - 제1회 자가측정 실시 후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대해 제2회 자가측정 시 반영

— 자가측정 문제(예시) —

- ▶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과장, 국장 등에게도 직무관련자이다. 1. 맞다 2. 틀리다

- 측정결과 활용
 - 부서·개인별 참여율은 반부패 평가에 가산점으로 반영
 - 행동강령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 및 집중 교육을 실시

03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전산시스템

“외부강의·회의 내용을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신고·관리하여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외부강의 신고 관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노동부]



- 자체 전산망에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시스템」 구축
 - 신고자, 외부강의·회의 등의 기본정보 및 세부사항 입력과 변경 기능(유형, 요청자, 시간 및 대가, 일괄 및 개별 신고 등)
 - 기관·개인별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현황 집계 및 출력 기능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에 대한 결재 기능 등
- 도입 효과
 - 본부 감사관실에서 전체 직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 과도한 대가 수령 및 직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빈번한 출강 등에 대해 사전 제재 가능
 -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미신고자 파악이 용이

04



특화된 행동강령 홈페이지 (행동강령 신고센터) 운영

●● 행동강령만 특화시킨 별도 코너를 구축하여 행동강령에 관한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강원도]



-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망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센터, 내부고발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등 3개 메뉴로 구축·운영
 - 행동강령 질의·응답 및 알기 쉬운 행동강령 등 권익위 교육 자료를 수시로 제공
 - 외부강의 신고, 내부고발 등 온라인을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구축내용
 - 공무원 행동강령 센터 : 교육자료 및 외부강의 신고하기 등
 - 내부고발 신고센터 : 운영목적 및 사례, 신고하기 등
 - 클린신고센터 : 신고금품의 처리, 신고하기 등

05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 알리미

- 직원들의 행동강령 이해도를 증진하고 올바른 공직 윤리의 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 4회 총 12회 '행동강령 실천기준'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

[경기도]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청렴명언, 부패방지 행동사례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청렴 문안 등을 선정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

핸드폰 문자 알리미(예시)

월별	문자 내용
○월	공무원은 부당한 금품·향응 등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월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에게 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월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월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06



청렴(행동강령) 관련 공모 활용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관련 슬로건·포스터 등을 공모하여
관련 자료를 공문서, 화면보호기, 전광판, 홍보물 등에 활용합니다. ●●

[한국공항공사]



- 공모주제(슬로건, 포스터·사진, 청렴 실천사례)
 - 슬로건 부문
 - 청렴문화 조성의 필요성 강조 및 부패신고 관련사항
 - 임직원 행동강령 실천·강화에 관한 함축적 표현
 - 포스터 및 사진 부문
 - 청렴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사진으로 청렴 실천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사진
 - 청렴 실천사례 부문
 -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렴도 향상 추진 사례
 - 반부패·청렴사례 발굴 및 타 임직원의 귀감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등 각종 청렴사례
- 우수작품(슬로건, 포스터, 사진)을 홈페이지, 문서, 계약서 및 각종 홍보물 등에 게재

07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

“업무망 접속 시 행동강령 문제풀이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문제풀이를 해야만 업무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서울 도봉구]



- 매일 내부 전산시스템 접속 시 행동강령 문제풀이 팝업창이 자동으로 실행되며, 직원이 행동강령 문제의 정답을 맞혀야 시스템에 접속이 되도록 함
-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문제풀이를 통해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실천 의지 제고

— 행동강령 로그인 문제(예시) —

문) 다음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경우는?

- ① 친구의 모친 회갑연에 10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
- ② 종교단체 · 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 · 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50만 원 경조사비
- ③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소속 직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 화환
- ④ 외부강의를 퇴근 후,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 출강하고 강의료를 받았다면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08



청렴(행동강령)교육 의무화

●● 내자교육 과정, 시설공사계약 과정, 조달계약협상 과정 등
조달전문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정책 및 공직윤리 교과목을
1시간 이상 배정하여 교육합니다. ●●

[조달청]



주요내용

-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교육과정에 반부패·청렴정책 및 공직윤리 교과목 개설·운영
 -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방향, 행동규범과 금품제공 시 처리 요령,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적발사례 소개
-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청렴 정책 및 행동강령을 교육함으로써 파급효과 제고
 - 강의 중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 또는 적발내용을 발표하는 등 서로 공유하며 토론 및 대안을 모색
 -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적또는 변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

09

승진시험 시 행동강령 문항 반영

“승진시험에 행동강령 문제를 출제하여 자발적인 행동강령 학습을 유도함과 동시에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 직원의 승진시험에 행동강령 문항을 반영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인사고과에 가점을 부여

점 수	가 점
50~59점	0.2점
60~69점	0.3점
70~79점	0.4점
80점 이상	0.5점

- 운영효과
 - 행동강령에 대한 관심도 및 이해도 증가에 따른 실천력 제고로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 1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금품·향응·편의제공 3년 연속 Zero 달성



10



청렴 문자 알리미 운영

●● 부패취약분야인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주일 단위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업주에게 시의 청렴의지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절차 등을 문자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

[경북 영주시]



-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의 많은 부분이 계약업무(공사, 구매, 용역)에서 발생
 - 이를 예방하고자 일주일 단위로 당해 기관과 도급계약을 한 사업주들에게 청렴 알리미 문자를 제공
- 운영시스템 : 자체 UMS(Unified Massaging System)이용
 - 전송방법 : MMS 장문(한글 1,000자까지 가능) 기능 활용
 - 통보부서 : 회계과(계약부서) 등
 - 전송문자 : 시의성을 고려하여 선정

— 청렴 문자 알리미(예시) —

- ▶ 영주시 감사관입니다.
영주시 모든 공직자는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니
귀하께서도 청렴영주 실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



동영상 청렴메시지

- 사회 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청렴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관의 청렴의지를 홍보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합니다. ●●

[서울 강남구]



- 반부패 청렴사회를 지향하는 각계 각층의 시민, 저명인사, 공직자 등의 청렴메시지를 촬영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 일반시민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함께 청렴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하는 기회를 마련

동영상 청렴메시지 참여인사

연번	참여인사	연번	참여인사
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7	세계화전략연구소 소장
2	여성부장관	8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9	경기고등학교 교장
4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10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5	한국부패학회 회장	11	리서치 & 리서치 대표
6	세계자원봉사협의회 회장	12	강남구 의사회 회장

12



기관 행동강령 운영 강화

●● 기관 행동강령을 운영함에 있어 온정주의적 처벌을 지양하고, 자체 행동강령 규정 및 징계처분 수준 강화, 행동강령 내용의 구체화를 통해 소속 직원들의 행동강령 준수의지를 확립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 기관별 행동강령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행동강령 관련 제도를 강화
- 행동강령 운영강화 세부내용
 -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2진 아웃제 실시
 - 행동강령 위반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근무를 제한하고 일정 기간 동일 직급에서 최하위로 평정
 - 징계양정규정 엄격 적용
 - 일정 범위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행위는 징계 시행 전이라도 직위를 해제하며, 징계 만료 후 복직된 경우라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집중 관리

13



행동강령 평가인증 제도

●● 내부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행동강령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스템에서 시험 응시, 일정 기준 이상의 득점 취득 시 기관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결과를 부서평가, 개인평가에 반영합니다. ●●

[서울 강남구]



● 운영절차

- 1단계 :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사이버 청렴교육을 구에서 자체 제작한 청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 2단계 : 행동강령 시험 응시
 - 문제은행식으로 100문항 중에서 무작위 25문항 출제
 - 시험 불합격 시 3일 후 재응시 기회 부여
- 3단계 : 인증서 수여
 - 합격자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출력

● 인센티브 부여

- 부서별, 개인별 청렴평가 등에 가산점 부여

14 

클린민원 안내문 배부

●● 인·허가 민원 접수증 교부 시 민원인에게 부조리 신고 안내문을 전달하여 소속 직원들의 금품 요구, 부적정 처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합니다. ●●

[경기도]



- 인·허가 민원 접수증 교부 시 민원인에게 안내문 전달
- 부패즉사(腐敗卽死) 청렴영생(清廉永生) 의지 전달
-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안내

클린민원 안내문

접 수 증	
제120호	접수일시 : 2009. 01. 15. :
① 민원명	
② 민원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는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불허거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000-0000-000 ● ○○도 홈페이지(www.gg.go.kr) →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2010년 행동강령 우수제도사례

15



청렴커뮤니티 결성

“ ‘청렴자가진단의 날’을 지정하고 자체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진단 실시, 팀블로그에 등재·공유하는 등 참여형 청렴조직 문화운동을 추진합니다. ”

[관세청]



-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청렴자가진단의 날[CSC(Clean Self Check) day]’로 지정
 - 잠재 청렴도를 스스로 측정하도록 하고, 진단 후에는 모범답안을 전 직원에게 발송
 -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에 팀블로그를 제작하여 월별 CSC-day 시행자료를 등재하고, 팀블로그를 통해 CSC-day를 시행하는 등 ‘청렴 노력공동체’로 운영

- 정기적인 ‘청렴 이벤트化’로 청렴에 관한 관심 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CSC-day 라는 이미지 정착
 - 출제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상호 토론

- 연말 CSC-day 참여 우수자 포상으로 인센티브 부여
 - 개근상, 만점상, 행운상 등 상품권으로 시상

16



클린모니터요원 운영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관내 외부 민간인을 클린모니터요원으로 선정하여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한 제보, 미담 수범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합니다.”

[전남 영광군]



- 임기 및 자격
 -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자격 : 관내 거주자로서 군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
- 모니터요원의 직무
 - 공무원의 부정부패 등에 관한 제보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관한 제보
- 운영 계획(방법)
 - 정보 수집 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유기적 체제 유지 등
 - 무보수 명예직으로 읍면별 구역을 나눠 활동
- 인센티브 부여
 - 우수활동 모니터요원 표창 (반기별 1명)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17



기관장 퇴직 전 감사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통한 바람직한 공직윤리 확립과
반부패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교장 등의 퇴직 예정일에 앞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 퇴직예정자가 정책추진 및 예산집행 사항의 적법성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퇴직하게 되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
 -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현직 공무원이 퇴직자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 책임규명이 어려움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직속기관장, 공·사립학교장 퇴직예정 기관 중 직전 감사 이후 1년이 경과한 기관
 - 감사분야 : 정책 및 취약분야 재정 운용, 회계, 학사 등
 - 감사시기 : 퇴직 예정일 1~3개월 전
- 권익위에서 위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퇴직 직전 학교장에 대한 감사시스템 도입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
 - ※ 「학교발전기금 부패실태 조사결과 개선 방안 통보」
(심사기획과 - 1147, '09.10.23.)

18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 범죄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함으로써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경기 성남시]



- 적용 대상
 -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성범죄, 사기, 도박, 뇌물수수
- 외부 조사기관 통보내용에 따라 대상자 및 이행시간 통보
 - 분기별 징계 처분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 ※ 징계양정에 의한 징계처분 후 별도 사회봉사활동 명령
 - 2개월 이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 1.5배 가중
- 봉사시간 : 8~24시간
 - 훈계 8시간, 경징계 16시간, 중징계 24시간
- 사회봉사활동 뿐 아니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서별
근무기강 평점제'와 병행 운영하여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

19



분임 행동강령책임관 및 청렴지기 운용

“산하 기관별로 근무특성을 반영하여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을 임명하고
단위사업별로 청렴지기를 선임하여 상담, 점검, 교육, 청렴 캠페인 등을
실시합니다.”

[한국공항공사]



-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제도 운영 및 추진
 - 분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각 지사별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선임
 -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의 세부 임무
 - 지사별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 행동강령 위반점검 및 청렴정책에 대한 메신저 역할
(경영진 ⇔ 행동강령책임관 ⇔ 분임 행동강령책임관)
 - 행동강령 추진실적 및 동향 보고, 클린신고 처리 등

- 단위사업에 대한 청렴지기 구성·운영
 - 청렴지기 지정 : 전체 사업에 대해 각각 선임(분야별 1명)
 -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부서와의 창구역할 및 자체감찰을 강화하고,
단위사업별 행동강령 멘토링

20



행동강령 위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금품 등 제공 여부 및 공정성, 친절도 등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하여 비리를 예방하고 친절도 향상을 도모합니다. ●●

[병무청]



주요내용

- 온라인 「청렴지킴-e」 시스템 구축
 - 민원 처리 다음날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에 대한 설문서를 민원인에게 발송
 - 응답 내용 분석 및 결과에 대한 부조리 사례 등 조사
- 「청렴지킴-e」 결과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 금품 요구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감사담당관실이 조사
 - 당해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및 부조리 신고자에 준하여 처리하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을 지급
 - 분기 1회 운영실적 분석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
 - 조사·분석 결과를 전 소속기관에 전파하여 경각심을 고취
 - 기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D/B)

21



공정한 징계처분을 위한 동료 사전심의제

●●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 각종 감사 적발결과를 최종 확정하기 전 징계처분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삭제하고 학연·지연 등이 배제된 동료심의위원회에서 감사결과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의합니다. ●●

[한국철도공사]



- **심의대상**
 - 감사결과 중징계 또는 처분대상이 다수(10인 이상)인 중요 사안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7명으로 구성,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은 감사실 직원으로 구성
 - ※ 심의안건을 감사한 담당 팀장 및 조사자를 제외
- **심의방법**
 - 심의위원이 개인별 심의 후, 의견을 종합
 -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다수결로 정리
 - 처분 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심사위원 구성 시 학연·지연 등을 배제하여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확보

22 

직무청렴계약 제도

●● 직무와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약에 직무청렴계약을 포함하고 청렴계약 위반 시 성과금 등을 환수토록 하여 사후 책임을 강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직원 성과계약과 직무청렴계약을 동시 체결
 - 사후 책임 강화 및 계약위반 시 성과금 환수기준을 마련

구 분		제 재 내 용
형 확정 시	금고 이상	당해 연도 성과금 전액 지급 취소
	금고 미만	당해 연도 성과금 50%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성과금 지급 취소
형 선고 시	금고 이상	당해 연도 성과금 전액 지급 유보
	금고 미만	당해 연도 성과금 50%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성과금 지급 유보

- 직무청렴계약 체결대상에 이사장, 병원장 등을 추가하고 신규 직원 및 정규직 전환 채용 시 청렴서약서 준수를 서명 받는 등 대상을 확대

23



청렴배심원 제도

●● 행동강령 위반사례, 감사처분 사례를 내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부패행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한국철도공사]



주요내용

- 내부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감사처분 사례와 더불어 감사처분(징계)을 게시
 - 청렴에 대한 관심도 및 징계양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부패행위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감사처분(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
 - 부패사태에 대한 임직원 경각심 고취로 동일 사례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
- 처분(징계) 종류에 따라 인사·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하는 코너를 통해 임직원들의 징계양정별 효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사규위반 유형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감사처분이 대폭 감소 (3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02

2011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 ①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도입 | 한국전력공사
- ② 청렴식권 제도 | 한국공항공사
- ③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④ 청렴기관(부서) 인증제 | 관세청
- ⑤ 사내 트위터를 통한 행동강령 전파 강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1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도입

●● 직원이 공용차량의 유료를 개인차량에 부당하게 주유하지 못하도록 법인카드에 고유 차량번호를 등록해 지정차량에만 주유용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합니다. ●●

[한국전력공사]



- 업무용 법인카드와 별개로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주유전용 법인카드 도입
 - 카드별 고유 차량번호 등록으로 지정차량 이외 주유 제한 (차량별 1매/전체 3,119매)
 - 주유소 이외 모든 구매처 제한 (단, 사용시간 제한 없음)

일반 법인카드와 주유전용 법인카드 비교

일반 법인카드



클린 주유전용 법인카드



02 청렴식권
제도

-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민원인(직무관련자)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부서별 청렴식권을 지급, 적극 사용토록 홍보하여 건전한 식사접대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

[한국공항공사]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와 불가피하게 동행 식사 시 청렴식권 사용
 - 식권 사용대금은 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예산으로 집행하고, 구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장려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원인 응대로 내부 직원 및 고객만족도 제고
- 청렴식권 제도 세부내용
 - 구내식당이 있는 본·지사 전체
 - 민원인(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과 업무처리 중 불가피하게 동행하여 식사가 필요할 때 사용
 - 본사는 행동강령책임관, 지사는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이 지급·관리
 - 지급수량 : 1인당 2매 기준, 부서별 공동 사용

03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 사립학교 법인정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의 근거를 두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실천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환경을 조성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학교법인 정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의 근거를 두어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실천
 -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 강화와 이행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체계 마련
-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 강화
 -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사립학교까지 확대
 - 전 사립학교 찾아가는 맞춤형 행동강령 교육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책임관 교육 시 사립학교 포함
- 효과
 - 사립학교 교직원의 윤리규범 제시로 책무성 강화
 - 사립학교 행동강령 운영정착을 통한 청렴의식 향상

04



청렴기관(부서) 인증제

-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부서로서 청렴도가 높은 기관(부서)을 청렴기관(부서)으로 인증하여 포상하고 청렴깃발 게양, 청렴현판 부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관세청]



주요내용

● 청렴기관(부서) 인증 및 해제 기준

구분	인증요건	해제요건
부패 기준	최근 1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은 세관 등	최근 1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 발생한 세관 등
청렴도 기준	외부청렴도 평가 상위세관 등	외부청렴도 평가 하위세관 등

● 청렴기관(부서) 인센티브 부여

- 청렴기관(부서) 인증서 수여, 청렴기관(부서) 대내외 선포
- 청렴기관(부서)기(旗) 게양, 청렴현판 부착, 포상금 지급
- 예산 지원 확대, 기관운영감사 면제(1회)

● 청렴인증 해제기관(부서) 조치내용

- 청렴기관(부서)기(旗) 하강 및 청렴현판 제거

05

사내 트위터를 통한 행동강령 전파 강화

●● 임직원이 언제 · 어디서나 임직원 행동강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쌍방향 청렴소통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임직원의 행동강령 인지도 및
청렴수준을 향상시킵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내 기업용 트위터를 통해 쌍방향으로 행동강령 전파
- 주요 임직원 행동강령 사항 전파
 - 단문형태의 요약식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를 통해서 전달하기 어려운 행동강령 정보 등을 기업용 트위터를 통해 상세한 설명식의 알림으로 임직원에게 전달



03

2022년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



- 1 직무관련업체 지인 신고 제도 | 한국동서발전(주)
- 2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 | 행정안전부
- 3 청탁행위등록 사전 자가진단제 | 대전광역시교육청
- 4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 확대를 통한 행동강령 운영 강화 | 대검찰청
- 5 참여형 교육 「행동강령 상담사례 댕글달기」 | 기술보증기금, 대전도시공사
- 6 금지된 금품 처리 공개사이트 운영 | 한국남부발전(주)
- 7 방만경영 자가진단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 8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9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강화 |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 10 청렴IQ 측정 및 청렴온도계 시스템 | 한국도로공사

01



직무관련업체 지인 신고 제도

“소속기관과 관련이 있는 직무관련업체(협력회사 등)와 지인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조성합니다.”

[한국동서발전(주)]



- 거래 협력회사 임직원 및 계약자를 홈페이지에 등록
 - 지인거래 신고로 협력회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실현

- 신고대상 : 거래 계약관계의 협력회사 임직원 및 계약자
 - 신고범위
 - 임직원 본인과 친인척, 학연, 지연 등의 관계인 경우
 - 임직원, 관공서, 특수기관의 소개 및 연고자인 경우
 - 임직원 본인이 과거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 신고방법 : 청렴윤리 사이트/협력사 지인신고 화면
 - 지인거래 신고서 제출 → 관리자 → 행동강령책임관 최종확인

02 청렴주의보 발령 제도

●● 반부패 · 청렴 위해요소 및 자칫 실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 및 교육을 실시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행정안전부]



- 시기별로 과거 적발된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망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경각심 고취
 - 월 1회 이상 정례 발령 및 부패취약시기 집중 발령

| 청렴주의보 발령목록(예시) |

구분	청렴 주의보
1호	출장여비 부당집행 사례
2호	외부강의 · 회의 등 대가기준
3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접대 수수
4호	인사청탁 등의 금지 사례
5호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6호	직무관련단체 경조사 대리통지 사례
7호	기관 SMS이용 경조사 통지 사례

03 

청탁행위등록 사전 자가진단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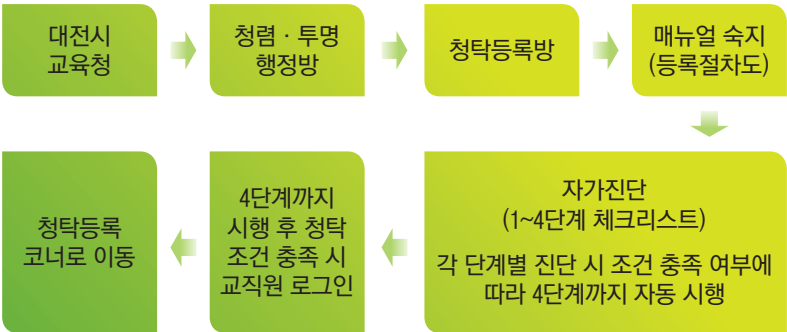
●●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요청 또는 문의를 받는 경우, 4단계의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청탁여부를 구분하여 청탁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하도록 운영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 권익위에서 배포한 4단계의 체크리스트를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 자가진단 시 청탁으로 진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청탁등록방으로 넘어가 로그인 후 등록토록 유인

운영절차



04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 확대를 통한 행동강령 운영 강화

●●알선·청탁 근절을 위해 알선·청탁의 이익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으로 확대합니다. ●●

[대검찰청]



- 알선·청탁으로 인한 이익의 범주를 ‘부당한 이익’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으로 확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u>부당한 이익</u> 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u>이익</u> 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05



참여형 교육

「행동강령 상담사례 댓글달기」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임직원들의 댓글참여를 유도하여 행동강령 이해도 및 실천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기술보증기금, 대전도시공사]

주요내용



- **교육방법**
 - 전산시스템의 '청렴마당' 코너에 '댓글달기' 프로그램 신설
 - 매월 윤리상담 사례 또는 최근 윤리이슈 중 임직원이 공감하는 공통 사안을 게시하여 '댓글달기' 형식으로 의견 개진
- **교육시기**
 - 매월 이슈 사례를 게시하여 참여형 댓글달기 교육 실시
- **운영절차**
 - 윤리이슈 사례 선정 → 윤리이슈 게시 → 댓글달기 참여 → 우수의견 선정
- 매월 우수 댓글의견을 선정하여 상품권 및 청렴마일지리 등 인센티브 부여

06



금지된 금품 처리 공개사이트 운영

●● 금지된 금품 처리 내역을 사내 시스템에 공개하여 금지된 금품 수수 신고에 대한 직원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한국남부발전(주)]



주요내용

- 무기명 제공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수수 신고사례를 사내 시스템에 공개하여 수수 금품 처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수수 금품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물품 등으로 처리
- 금품 처리 투명화로 청렴 의식 제고
 - 사업소별 공유하기 어려운 금품 수수 내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금품 처리의 신속성 및 활용도 제고
 - 무기명으로 제공된 금품의 활용내역 공개로 투명성 강화
 -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및 청렴 공감대 형성
- 사회취약계층(저소득층 등) 지원사업과 연계
 - 부패·변질되기 쉬운 금품 처리를 위한 비용 감소
 - 지역 지원사업과 연계한 금지된 금품 처리의 활성화

07



방만경영 자가진단 실시

●● 공사의 인건비, 경비, 예산집행 등에 내재되어 있는 행동강령 미준수, 예산낭비, 허술한 통제에 대한 방만경영의 대표적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 감사실에서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 배포
 - 사업부서는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방만경영 자가진단 실시 후 자율적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 제출

방만경영 자가진단 Tool(예시)

구분	방만경영 유형	방만경영 요소	자가진단 평가				
			5	4	3	2	1
계약	계약방식 위반	경쟁원칙을 무시한 불공정 입찰로 대외 이미지 손상 야기					
	납품업체로부터 부적절한 향응	임직원의 부패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 위험 등 야기					
	입찰정보 사전유출	비윤리적 업무거래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해와 공사의 대외 평판 하락					

08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 행동강령 적용 대상자를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적용, 실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행동강령 이행환경을 적극 조성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내용



- 교육청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범위 확대
 - 정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서 도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
- 확대적용 방법
 -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확대 시행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여 아래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
 - 행동강령의 준수를 통해 청렴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서 명시(예시) |

제2조(성실의무) “을”은 근로계약에 따라 “갑”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청렴한 제주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09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행동강령 이행환경 강화

●●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청렴 OX 퀴즈,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조회 등 행동강령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마사회]



- 직원들의 스마트폰 사용 급증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청렴콘텐츠 스마트폰 앱 개발
- 직장 내뿐만 아니라 일과시간 이후 행동강령 갈등사례 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갈등상황 극복

청렴콘텐츠 내용

구 분	주요내용
회사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O 청렴의지 및 인사말 • 비전/ 연혁/ 조직도 • 직원 연락처 등
청렴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신고센터 안내/ 내부고발(신고하기)/ 신고내역 확인
청렴윤리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현장/ 행동강령/ 행동지침
청렴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사항/ 청렴이벤트
청렴OX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도 자가측정용 퀴즈
마일리지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마일리지 조회

10 

청렴IQ 측정 및 청렴온도계 시스템

●● 소속기관(부서)별로 청렴도 수준(청렴IQ)을 측정하여 측정결과 및 참여율을 사내 정보시스템에 온도계 형식으로 표출하고 기관 성과에 반영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 개인별 청렴IQ 측정
 - 청렴지수 = 자가진단 5문제 + 퀴즈진단 5문제
 - 자가진단 : 부패가능성에 대한 자가진단 설문
 - 퀴즈진단 : 청렴상식과 임직원 행동강령 사례 위주
 - 측정결과 : 5등급(청렴 천재, 수재, 중간인, 둔재, 박약)

- 청렴온도계 표출
 - 기관별 측정결과 및 참여율을 온도계 형식으로 표출

구분	5℃	3℃	1℃	-1℃	-5℃
청렴IQ(점)	140 ~ 170	120 ~ 139	100 ~ 119	80 ~ 99	80점 미만
참여율(%)	100%	99 ~ 80%	79 ~ 60%	59 ~ 40%	40%미만

- 산하기관 조직업적 팀 평가 시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

2015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Tel. 044)200-7681 Fax. 044)200-7942
www.acrc.go.kr

